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2-2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public and private data vitalization policy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2022.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2-2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public and private data vitalization policy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윤성욱/이영종/김민진/강준모/선지원/이보옥/정원준/문정욱/이준배

2022. 12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윤성욱 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영중 부연구위원

김민진 전문연구원

강준모 전문위원

선지원 교수

이보옥 책임연구원

정원준 부연구위원

문정옥 연구위원

이준배 교수

목 차

요약문	ix
제1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2장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 분석	4
제 1 절 정책 동향	4
1. 공공데이터 정책동향	4
2. 민간데이터 정책동향	9
3.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 동향	11
제 2 절 데이터 개방 사례	16
1. 부처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성과	17
2. 국내외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27
3. 국내외 방송통신분야 민간데이터 개방 사례	35
제 3 절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39
1. 공공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39
2. 민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42
제 4 절 소결	44
제3장 데이터 개방 수요 조사	47
제 1 절 수요 조사	47
1. 조사 개요 및 목적	47
2. 조사 설계	48
제 2 절 설문조사 결과	50

1. 응답자 특성	50
2. 데이터 활용 현황	51
3. 주 사용 데이터별 활용 현황	54
4. 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개방 수요	56
5. 민간기업 데이터 수요	58
6. 데이터 수집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60
7.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	60
제 3 절 그룹인터뷰 결과	62
1. 주요 서비스 및 업무	62
2.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및 수요	62
3. 민간데이터 활용 현황 및 수요	63
4. 기타 건의사항	64
제 4 절 데이터 개방 검토 의견 및 소결	64

제 4 장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 제약조건 67

제 1 절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67
1.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67
2.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고려사항	68
3.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	70
제 2 절 방송통신분야 조사데이터 개방	82
1.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	82
2. 개별법상 조사데이터의 공개·개방 제한 규정	83
3. 통계법상 승인통계 또는 지정통계의 공개·개방 제한 규정	84
4. 법률상 근거 없는 조사의 공개·개방 제한 규정	84
5. 조사데이터의 공개 및 제공을 위한 법적 방안	86
제 3 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활용	87
1. 자동화된 데이터 학습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87
2. 이용허락 받은 저작물의 학습용도 사용에 관한 법률 쟁점	90

제 4 절 OTT 데이터 개방	91
1. 방송통신위원회 OTT 관련 데이터 개방 현황	91
2. OTT 관련 데이터 공개가능성 검토	94
제 5 절 소결	97
제 5 장 결 론	100
참고문헌	103

표 목 차

〈표 2-1〉 공공데이터 정책 주요 내용	6
〈표 2-2〉 민간데이터 관련 정책 주요 내용	10
〈표 2-3〉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	13
〈표 2-4〉 부처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지침·규정 현황	17
〈표 2-5〉 부처별 공공데이터 제공·관리에 관한 주요 지침 체계	18
〈표 2-6〉 부처별 공공데이터 제공·관리에 관한 주요 규정 체계	20
〈표 2-7〉 공공데이터 관리 규정(지침, 훈령) 여부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건 수 ..	22
〈표 2-8〉 시스템 구축 시점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비교	24
〈표 2-9〉 '20~'21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주요 성과	26
〈표 2-10〉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28
〈표 2-11〉 해외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32
〈표 2-12〉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	40
〈표 2-13〉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41
〈표 2-14〉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략 및 사례	43
〈표 3-1〉 이해관계자 수요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개요	48
〈표 3-2〉 설문조사 내용	48
〈표 3-3〉 FGI 조사 내용	49
〈표 3-4〉 응답자 특성	50
〈표 3-5〉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기반 서비스·연구	52
〈표 3-6〉 주사용 데이터 출처, 종류, 서비스·연구 사례, 수집방식	54
〈표 3-7〉 방송통신위원회 요청 데이터	56
〈표 3-8〉 민간기업 데이터 수요	59
〈표 3-9〉 희망 데이터수집 문제점 및 개선 의견	60
〈표 3-10〉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	61

〈표 3-11〉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수요(설문조사, FGI)	65
〈표 4-1〉 타부처 공공데이터 관련 지침 및 규정	69
〈표 4-2〉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	70
〈표 4-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분야 공공데이터 현황(2022.11. 기준)	92

그림 목 차

[그림 2-1] 공공데이터 주요 정책 추진 경과	4
[그림 2-2] 행안부 국가데이터맵 서비스	25
[그림 2-3] 과기부 통합데이터지도 개요도	25
[그림 2-4] KT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마켓	36
[그림 2-5] 네이버 데이터랩	38
[그림 2-6] 카카오 데이터트렌드	38

요 약 문

1. 제 목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데이터 경제하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전 과정에 원활하게 유입, 순환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통신분야 데이터는 단독, 혹은 타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활용되었을 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개방 및 활용 활성화가 시급하지만,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은 시장의 기대와 필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신규 데이터 발굴을 위해 데이터 개방 수요를 조사하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약조건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2장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 분석’에서는 국내외 공공·민간데이터의 정책 및 개방 동향, 국내외 공공·민간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사례를 통해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단서를 발굴한다.

제3장 ‘데이터 개방 수요 조사’에서는 데이터 이용자들로부터 데이터 개방에 관한 의견을 설문조사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들의 데이터 수요와 방송통신분야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분석하였다.

제4장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 제약조건’에서는 2장과 3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의 주요 4 가지 제약조건을 검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제약조건으로는 ①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② 방송통신분야 조사데이터 개방, ③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로의 활용에서의 저작권, ④ OTT 데이터 개방 등이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전 세계 주요국에서는 데이터 선순환을 통한 경제 진흥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공공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구축과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민간데이터의 경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데이터맵을 통한 공공데이터 검색, 통합데이터지도를 통한 공공-민간데이터 연계, AI 허브를 통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사용 지원 등을 통해 공공·민간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개방되고 있으며, 민간데이터로는 통신사, 플랫폼사를 중심으로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유되는 데이터와, 상품화를 거쳐 유통되는 데이터가 시중에 공개되어 있다.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민간데이터는 민간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개방 사이트,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 개방 또는 거래되고 있다.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는 독자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타 분야 데이터와의 이종결합을 통해 공공서비스 개선, 기업의 서비스 개선이나 신규 서비스 개발, 인공지능 모델 성능 향상 등에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개방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사용자들의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며, 동시에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개방되고 적시적소에 활용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일례로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규정은 효율적인 데이터 제공을 위해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이 동반된 데이터의 수집 및 개방 전략은 구축되는 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인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데이터 개방 수요를 조사하고, 데이터 개방에의 기술적, 제도적 이슈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분야 잠재적 데이터 수요를 확인하고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듣기 위한 데이터 개방 수요 조사 결과, 잠재 데이터 수요자들은 다양한 출처, 종류의 데이터 구축·개방을 요구하고 있었으나, 민간에서 보유한 데이터가 대부분이었고,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공공데이터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연관성 측면에서 타 부처와의 소관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데이터 개방 활성화를 위한 다부처 협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OTT 성장에 따른 관련 데이터 수요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OTT 관련 데이터 개방,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의 경우 데이터가 분절된 경우가 많고 적시성 있는 업데이트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용자들은 다양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원시데이터(raw data) 형태의 데이터 개방을 선호하며, 전송방식에 있어서는 실시간 수집이 가능한 API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 분석과 데이터 개방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의 개방, 활용 활성화를 주요 제약조건(①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② 방송통신분야 조사데이터 개방, ③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로의 활용에서의 저작권, ④ OTT 데이터 개방)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처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 규칙, 직무에 따른 권한, 업무 분장을 규정한 별도 지침은 부재하다. 이에 타 부처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지침, 규정과 방송통신분야 데이터의 특성,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체계 등을 고려하여 6장과 시행을 위한 부칙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현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여 방송통신분야의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구축 및 개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분야 조사데이터 개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련 조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각종 조사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는 ① 개별법에 근거를 갖춘 경우, ② 통계법상 승인통계나 통계청장이 지정 및 고시하는 지정통계인 경우, ③ 실정법상의 근거를 두지 않고 정부로부터 통계조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진행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법이나 통

계법에 근거하여 수행된 조사의 경우 각 법률의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되나,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및 공공데이터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조사의 원시데이터(raw data)는 조사 수행을 위해 수집된 원본데이터로써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공개에 대한 의무가 법률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조사데이터의 요청 주체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인 경우 일부 비식별 처리 없이 식별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통계법 제30조 제2항)이 있음에 주목하여 조사 수행에 관한 법률에 식별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조사데이터의 원본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방송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 학습용데이터화하여 개방 시에 저작권 이슈가 존재한다. 현행 저작권법상에서 이러한 콘텐츠를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반조항으로 규정된 공정이용 조항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선제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일본이 일찍이 자동화된 정보분석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저작권법에 반영하였고, 비영업적 목적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 없이 사업자간 공유 또한 허락하여 적극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진흥한다는 점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저작권법에서도 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서 이를 학습용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 방송콘텐츠 저작물을 구입시 저작권 권리 자체의 이용허락 또는 양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 민간에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오롯이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법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OTT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지정하여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행 「방송법」에서 상정하는 방송에 대한 정의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서의 IPTV는 OTT 사업자를 포괄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사업자에게 실태조사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시청각미디어 서비스법」이 통과되어 OTT 서비스가 방송의 일부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제공 구조와 수익·비용구조가 일반 방송과 완전히 다른 OTT 서비스에 대하여 음성·영상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생기는 강력한 여론형성기능과, 희소성이 높은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여 공중에 송신한다는 특성에 근거한 일반 방송의 규제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용트래픽, 망 이용료 등의 데이터는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공개가 되는 피치 못한 상황에도 마스킹 처리되어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SUMMARY

1. Title

Research on public and private data vitalization policy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In the data economy that was started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ata needs to be smoothly introduced and circulated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goods and services production for stabl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public and private data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hould be urgently opened and utilized, since it can create high added value when used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other field data. However, data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ield is not sufficiently openly available and utilized as expected and needed by the market. Therefore,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demand of stakeholders to analyze openly available and use cases of public and private data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ield and identify new data. As such, constraint conditions on data opening and utilization were analyzed and its solution was proposed in order to make public and private data openly available and utilize them in this field.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In Chapter 2.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Data Opening and Utilization Cases, clues are discovered to advance the opening and utilization of public and private data, based on

the policy and opening trends of public and private data at home and abroad, along with use cases of analyzing and utilizing public and private data at home and abroad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ield.

In Chapter 3. Stakeholder Demand Analysis, the data demand of data users is analyzed by conducting a survey and group interview about data opening, with opinions for advancing data utilization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field being collected and analyzed.

In Chapter 4. Review of Constraints for Public/ Private Data Opening and Utilization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ield, four major constraint conditions of advancing public and private data opening and utilizing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ield, which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Chapter 2 and 3, are reviewed to find a way of eliminating those constraints. The four major constraint conditions include ① public data management system, ② opening survey data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ield, ③ copyright issues when utilizing as data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and ④ OTT data opening.

4. Research Results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implementing economic advancement policies capitalizing on a virtuous cycle of data.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arrying out policies for building and opening more public data and advocating for the use of private data through well-protected personal information. The government is striving to open public and private data and advocate its utilization through public data search using a national data roadmap, linking public and private data using an integrated data roadmap, and supporting the use of AI learning data.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leading the opening of public data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ield, while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and platform companies are sharing private data for the

public interest. The public data is opened on the public data portal, whereas the private data is opened or traded on the data opening portal possessed by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data exchanges. Public and private data in the said field is utilized independently and integrated with heterogeneous data in other fields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and corporate services, development of new services, and enhancement of AI model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o open data based on the demand of data users in various fields to advance the smooth and safe opening and utilization of data. At the same time, it is also necessary to prepare an institutional and technical framework to open data systematically and use it in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For example, guidelines and regulations on public data provision/ management can present the management principle and standard that should be followed by institutions to provide data efficiently. The data collection and opening strategy accompanied by the informatization strategy plan is required to improve the quality of data to be built. Therefore, this research surveyed demand for data to prepare a strategy of advancing public and private data opening in the said field, which 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hile also proposing improvement methods when opening data by reviewing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ssu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on stakeholders' demand, which was conducted to check the potential data demand i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and advance data utilization, potential data consumers demand the building and opening of various sources and types of data. However, data in the private sector was mostly in demand, but demand for public data manag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 relatively small. Nevertheless, it was found that a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s needed to advance data opening, since jurisdiction with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is ambiguous in terms of relevance. Notably,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a large demand for related data in line with OTT growth, and the necessity for establishing data management governance was raised. At the same time, since there are also opinions that public data in the said field is often segmented and not updated in

time, a method of resolving this issue is also necessary. It was also found that users preferred raw data for various analysis and the API transmission method, which allows real-time collection.

An analysis done on major constraint conditions (namely ① public data management system, ② opening survey data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③ copyright issues related to data us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 ④ OTT data opening) for advancing public and private data opening and utilizing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ield was done through study of public and private data opening and utilization cases and a survey on stakeholders' demand. There was also a review done on the method of eliminating those constraint conditions.

There are no separate guideline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o stipulate the basic rules that should be observed by the members of the government department, authority according to duties and division of labor, with regard to public data including quality control of public data. Accordingl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onceived the public data guidelines that are composed of six chapters and supplementary provisions for implementation, given the guidelines and regulations of other government departments for public data management, characteristics of data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ield, an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he guidelines comprised mainly the important matters stipulated by higher-authority laws, but it focused on what wa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carry out the work, considering the internal statu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ith the aim of efficiently building and opening public data in the said field.

We need to review the legal basis and related provisions for conducting an actual condition survey and statistical research to review the possibility of opening survey data in the said field. The legal grounds for conducting various surveys, such as an actual condition survey and statistical research can be ① based on individual laws, or ② national approval statistics in accordance with the Statistics Act, or statistics is designated and notifi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or ③

statistical research delegated or entrusted by the government without any grounds in the positive law. If a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individual laws or Statistics Act, the relevant provisions of pertinent law would be applied first. However, if there are no special regulation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In conclusion, the raw data of a survey is the original data collected for conducting a survey, and there is no law about its disclosure, sinc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of containing personal information and trade secret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is a ground regulation (Article 30.2 of the Statistics Act) of providing some identification data without de-identification, if the survey data requester is a public institution or national agency. Therefore, we may consider providing the original survey data by establishing the legal basis to provide identification data in the Act on Conducting a Survey.

When opening the videos possessed by public institutions or broadcasting companies as data for learning, the copyright issue comes into play. It is open to debate whether using contents such as learning data violates the current copyright law or not. There is a chance that such contents can be used as learning data based on the fair use clause that is stipulated as general provisions, but it is not easy to use such contents in advance, because fair use depends o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law.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vision of the domestic copyright law by benchmarking a related Japanese case. The Japanese government already reflected the exemption clause for automated information analysis in its copyright law, and actively has advocated data learning by also allowing data to be shared among service providers without compensation to the copyright holder, which is not limited to non-business purposes. In addition, when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r competent authorities purchase broadcasting content works to build them into learning data, a contract allowing the use of the copyright itself or a transfer contract must be formed, so that an environment can be formed that enables the private sector to fully obtain the profit from data learning.

At the same time,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annot designate OTT service provider data as public data and open it under the current law. Since the scope of broadcasting defined by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and IPTV defined by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do not include OTT service provider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cannot request OTT service providers to conduct an actual condition survey and submit data. In addition, even if OTT services are included as part of broadcasting services on the basis of the “Audiovisual Media Service Act”, it seems that since the service provision structure and profit/ cost structure are completely different in OTT services, regulation theory of general broadcasting cannot be applied, given that such regulatory theory is based on the function of strong public opinion formation by delivering messages unilaterally through audio and video, and its characteristic of broadcasting messages over airwave frequencies, which is a very scarce resource. It is highly likely that data such as usage traffic and network usage fees will be opened after masking even in unavoidable circumstances given that such data belongs to trade secrets.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Section 1. Purpose of Research

Section 2.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Data Opening and Utilization Cases

Section 1. Policy Trends

Section 2. Data Opening Cases

Section 3.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Cases

Section 4. Sub-Conclusion

Chapter 3. Stakeholder Demand Analysis

Section 1. Demand Analysis

Section 2. Survey Results

Section 3. Group Interview Results

Section 4. Review Opinions about Data Opening and Sub-Conclusion

Chapter 4. Review of Constraints for Public/ Private Data Opening and Utilizatio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Section 1. Review of the Public Data Management System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Section 2. Review of Opening Survey Data in th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Field

Section 3. Review of Utilizing Data for AT Training

Section 4. Review of OTT Data Opening

Chapter 5. Conclusion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新경제체제가 부상하였다. 이러한 新경제체제는 2011년 Gartner의 David Newman이 ‘데이터경제’로 명명한 이후, 2014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단일 디지털 시장전략의 일환으로 해당 용어와 개념을 도입하면서 조명을 받았다. 데이터 경제하에서 데이터는 경제발전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기술, 자본, 노동력, 토지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혁신과 질적 재편을 유도하고 있다. 데이터를 잘 구축하고 사용하는 산업이 흥하고 있으며, 이를 잘하는 기업이 산업 전체를 주도하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빅데이터 분석 시장규모는 2021년 2,405억 6,000만 달러에서, 2022년 2,718억 3,000만 달러, 2029년 6,555억 3,000만 달러(약 13.4%의 CAGR)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Fortune Business Insights, 2022).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및 연구소 등의 데이터 활용 주체는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공 및 민간 경제 전반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 또한 증가하였다. 과거 기업들은 자사의 경영과정에서 구축한 데이터를 의사결정과정 또는 경영 지원에 활용하였으나, 최근은 제삼자의 쿠키, 공개 정보, 데이터 구매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데이터를 수집,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의 과정과 결과가 컴퓨팅 파워 및 분석 툴의 발달로 인해 고도화됨에 따라,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면서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범위 및 규모 또한 확대되었고, 이에 기업들은 직접 구축한 데이터와 제삼자가 수집한 데이터(3rd-party data)를 결합하여 시장에 대

한 이해를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촉발된 데이터 경제하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전 과정에 원활하게 유입, 순환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데이터 순환의 장애로 인한 시장 실패의 가능성을 시장 신호의 작동을 중지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 개입하여 데이터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데이터의 비경합성, 비배제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참가자들은 여전히 데이터의 구축, 획득, 유통, 활용의 데이터 순환 전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는 단독, 혹은 타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활용되었을 때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OTT 시장 성장 및 한류로 인해 국내 문화콘텐츠의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통신분야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은 또 다른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신규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통신분야 보급 및 사용률¹⁾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의 통신분야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은 유통, 소매,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류비 절감, 상권 분석, 재난상황 극복 등 사회·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통신분야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활성화가 시급하지만 방송통신분야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은 민간 혁신주체의 기대와 필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활용방안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경제 전 분야의 데이터 순환을 촉진하고 데이터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방송통신분야의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방안을 도출하고, 데이터 활용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내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과 전체 브로드밴드 가입 대비 광섬유 고속 브로드밴드 가입수는 세계 1위 수준(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22, OECD Broadband Statistics 2021)

제2장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 분석’에서는 국내외 공공·민간데이터 정책 동향, 국내외 데이터의 개방·분석·활용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외 공공·민간데이터의 개방·활용·현황과 데이터 활용 활성화 촉진을 위한 요인을 도출한다. 제3장 ‘데이터 개방 수요 조사’에서는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수요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통해 새로 개방이 되어야 하는 방송통신분야 데이터의 종류와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제4장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 제약조건’에서는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분석과 데이터 개방 수요 조사를 통해 규명된 4가지의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 제약조건(① 공공 데이터 관리체계, ② 조사데이터 개방, ③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로의 활용, ④ OTT 데이터 개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제 2 장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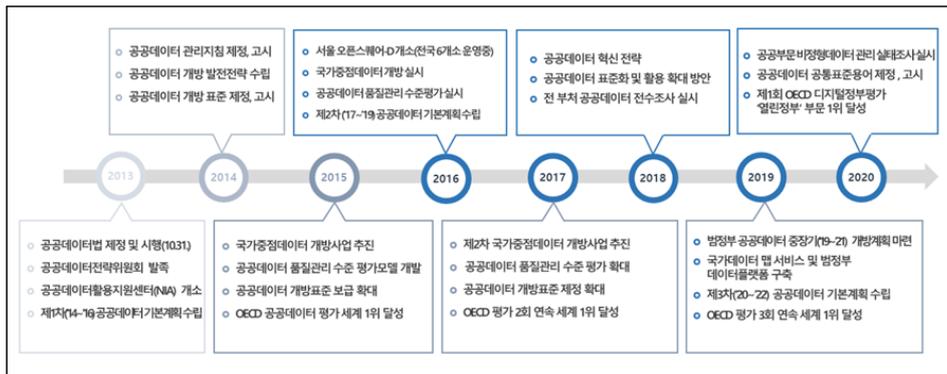
제 1 절 정책 동향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에 있어 정부 정책은 중요한 환경 요소다. 이에 본 절에서는 국내 및 해외 주요국의 공공 및 민간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데이터 경제 시대에 주요국 정부가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 간략히 살펴보았다.

1. 공공데이터 정책동향

행정 집행과정에서 생성되는 공공데이터는 담고 있는 정보의 규모 및 정확성이 담보되어 있고, 여러 식별키를 통해 타 분야 데이터와 이종결합 시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어 정부는 공공데이터 구축과 개방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림 2-1] 공공데이터 주요 정책 추진 경과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이 중 2013년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을 우선 살펴보고, 2020년 이후 제정/시행된 주요 법률과 정책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되었다.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개방, 데이터 활용을 중요한 축으로 하는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공데이터법 하에서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공표해야 하며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유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과 협력한 서비스에 한해 제공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공데이터포털 운영에 있어 협력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협조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6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 행정법)이 제정되었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가 공동 활용할 데이터를 조사한 후 등록대상을 확정해 공공기관에 등록 요청을 하면 공공기관은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2021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공공데이터에 대한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21년도에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헬스케어 분야, 자율주행과 같은 신산업 분야 데이터 등 6대 주제영역 26개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022년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정책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적 국정과제 분석, 전반적 일하는 방식 개선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을 위해 민·관협업의 질적 개방, 서비스별 패키지 개방으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기업지원 확대, 데이터 기반·지역사회문제 해결, 지방·안전 등 부내 주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2022년 9월,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요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전달,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국정 운영 및 행정업무 방식 전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등 범정부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표 2-1〉 공공데이터 정책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공공 데이터법 (2013)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사항을 점검 및 평가함 •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음 • 민간협력 서비스 제공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안되며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가 필요함 • 공공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포털 운영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함

구분	내 용	
데이터 기반 행정법 (2020)	목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 기본계획·시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성과평가, 활성화 계획, 데이터관리체계구축 등 매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1)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 2)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해야 함 • 데이터공동활용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가 공동활용할 데이터를 조사한 후 등록대상을 확정해 공공기관에 등록요청하면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해야 함. 공공기관은 데이터 보유기관의 승인 후 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음. 공동활용 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간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음 • 데이터통합관리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정책수립·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의 사항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운영해야 함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임명해야 함
공공 데이터 개방 2.0 추진전략 (2021)	목적	시장(수요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차세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으로 질 좋은 데이터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높은 품질로 개방 -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신산업 데이터 등 민간 산업발전에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을 강화하고, 기업간담회, 온오프라인 조사 등을 통한 수요 수렴 - 공공데이터 생성 전부터 데이터 표준 등을 반영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제도 본격 도입 • 다양한 형태의 공공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형 등 다양한 데이터를 오픈API 등 여러 방식으로 개방 - 이미지, 영상, 텍스트, 사물인터넷(IoT) 등 비정형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개방

구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개방하지 못했던 국세·보건의료 등의 데이터는 진위확인 및 마이데이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제공 • 민관협력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생산·활용 방법론 적극 도입 - 시민개발자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도 데이터를 수집·생성 - 공공데이터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큐레이팅 (curating) 서비스’를 추진하고, 공공데이터의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 기관과 전문기업을 연결하는 등 데이터기업 육성지원도 강화 • 2021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예정되었던 18개 분야 외에 민간의 데이터 수요를 반영한 8개 분야를 추가 발굴해서 26개 분야 개방 - 자율주행 (6개), 헬스케어 (7개), 스마트시티 (1개), 금융채정 (3개), 생활환경 (4개), 재난안전 (5개)
공공 데이터 정책 발전방향 (2022)	목적 (기본 방향)	데이터 기반 정부혁신(Innovation by Data) 정착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데이터 강국 도약 선도
	주요 내용 (핵심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기반 행정: 데이터 기반 혁신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선도적 국정과제 분석·지원 강화 - 데이터 기반의 조직·예산·인사 등 일하는 방식 혁신 - 메타버스 등 활용, 데이터 역량강화 지원 • 데이터 개방: 국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데이터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수집부터 대국민 서비스까지 민관협업 확대 - 민간의 완성형 활용을 위한 서비스별 패키지 개방 추진 -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편리한 방식으로 제공 • 데이터 활용: 기업성장·일자리 창출 등 사회현안 해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지원으로 유니콘기업 발굴·성장 촉진 - 주민참여와데이터기반 지역사회문제 해결 추진 - 지방·안전 등 부내 주요 데이터 활용 강화 • 공통기반: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및 이용기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데이터 공동활용 활성화 - 다차원적 데이터 품질관리 추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 (2022)	목적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구현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전달 등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여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과제 추진

구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업무방식 대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 실현과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 하고 공무원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 국민 참여 및 민·관 공동 성장 혁신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과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 구축 등 범정부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 데이터 안전 활용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 확립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 정책자료를 정리함

2. 민간데이터 정책동향

민간데이터에 관한 정책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적절한 보안 조치를 거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이 대표적이다(데이터3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효율화,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개념 명확화가 중심이 되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법 내에 개인정보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는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으나 가명정보는 통계, 연구, 상업적 목적, 공익적 기록 보존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데이터산업 이용촉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1, 이하 데이터산업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 생산, 활용 및 보호, 데이터 이용 활성화,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촉진, 데이터산업의 기반조성, 분쟁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표 2-2〉 민간데이터 관련 정책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데이터3법 개정안 (2020)	목적	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협치(거버넌스) 체계 정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 소관 부처를 하나로 모아 중복 규제를 없애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발의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정보 개념 도입)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안처리한 데이터(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연구·개발, 시장 조사, 상업적 용도의 통계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함 -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익명정보)의 법 적용 배제를 명확화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온라인 포함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함 - (개인정보처리자 책임 강화) 향후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데이터 활용 시 준수해야 할 필수 안전조치 사항(안전장치 및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체계 효율화) 개인정보 관련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조항이 개선되며,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 신용정보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 범위 명시) 개인정보는 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으며,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상업적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음. 공익적인 기록 보존을 위해서도 동의 없이 쓸 수 있으며, 익명정보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데이터 산업법 (2021)	목적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데이터산업법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데이터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공공, 민간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하고(국무총리가 위원장), 1) 기본계획 수립, 2)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정책, 제도개선 사항, 3) 데이터 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조정 심의를 해야 함

구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자산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를 보호해야 함 •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법 및 가치평가 체계,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 인증 기준 등의 마련과 관련 업무를 전담할 기관 등 지정을 추진함 • 데이터 사업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거래사업자, 데이터 분석제공 사업자 등은 과기정통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기정통부에 데이터 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제공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을 정리함

3.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정책 동향

해외 주요국은 데이터의 선순환을 통한 데이터 경제 진흥을 위해 노력 중이다. 미국의 경우 행정명령 형태의 가이드라인으로 범정부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로 재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2년 디지털 전략 이후 오픈데이터 정책, 빅데이터 정책, 오픈 정부 데이터법 등을 공표했으며 '연방데이터 전략 실행계획 2021(Federal Data Strategy Action Plan 2021)'은 2020년의 실행 계획의 성과와 교훈을 기초로 데이터 거버넌스와 기획 및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6개 기관 과제(Agency Actions)와 5개 실무 커뮤니티 및 공유 솔루션과제(Community of Practices and Shared Solution Actions)를 제시하였다.

중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적극적 빅데이터 지원 정책을 통해 데이터 산업 관련 생태계를 형성 하고자 한다. 2012년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규획을, 2017년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초기에는 공공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국가 생산성, 정부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기업과 산업에서의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발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ICT 융합 활성화 촉매이자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 수단으로 데이터를 인식하여, 법률을 제·개정하고 기본계획을 구상하였다. 액티브 데이터 전략,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 국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 등을 통해 민간과 공공분야의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에는 타산업간 이종데이터, 공공과 민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EU는 단일 디지털 시장 형성을 목표로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15)을 채택하고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데이터 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EU 내 합법적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GDPR을 통해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보호와 책임을 강화하였다. 2019년에는 법률, 기술 및 재정적 제약을 최소화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데이터 개방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EU 회원국의 오픈데이터, 공공부문 정보의 재사용 촉진을 장려했다. 2020년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법은 유럽 전역의 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통된 규칙 및 관행을 수립하여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되었다. 2022년에는 EU 데이터 전략에서 제안된 법적 프레임의 하나로 데이터법이 발표되었다. 여기에는 IoT 제품이나 관련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의무, 제3자에 대한 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용자가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비개인정보의 데이터 이동권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김병일, 2022).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유럽 국가 중 데이터 산업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2012년 데이터 전략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별 오픈데이터 전략을 발표하고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재정비하였다. 2017년 디지털경제법은 연구목적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통계위원회의 포괄적 정보접근권을 법제화하기 위함이었으며, 2020년 국가데이터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5가지 국가전략의 미션을 제시하였다. 2022년 4월, 영국 의회는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에 대한 문서(POSTNOTE)를 발표하여 효과적인 공공부문 데이터 공유에 대한 요구 사항과 관련 이점, 위험 및 장벽에 대해 논의하였다(KISTI, 2022). 데이터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설정되면 기관 간의 직접 데이터 전송, 연구 및 분석을 위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보안 지점 제공,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게시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표 2-3〉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관련 정책

구분	내 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전략, '12) 공개 데이터의 범위에 비정형 데이터를 추가 • (오픈데이터* 정책, '13) 오픈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원칙 제안 * 오픈데이터는 최종사용자가 완전한 형태로 입수, 사용 가능한 공개 데이터를 의미 • (빅데이터: 기회 포착과 가치보호, '14) 오픈데이터 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와 이를 위한 데이터 관리, 빅데이터 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제시 • (빅데이터 지역 혁신 허브, '15)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통합망 구축에 국립과학재단이 구축한 빅데이터 지역 혁신 허브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공유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 대학에 확대 적용 •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16) 연방정부 네트워킹 IT R&D 프로그램(Federal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D) 산하 빅데이터 협의체에서 7대 R&D 전략 및 1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빅데이터 산업 연구개발 진흥 전략 발표 • (인공지능 서밋, '18)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경제성장 및 국가 안보 확충을 목표로 민·관 관계자들을 초빙하고 인공지능 개발 관련 예산 확충 및 규제 철폐 등을 약속 • (개방저장네트워크, '18) 국립과학재단 주도로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구축 • (오픈 정부 데이터법 제정, '19) 민감하지 않은 모든 연방정부의 데이터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format)로 공개 • (연방 데이터 전략 실행계획, '20) 보안, 프라이버시 및 기밀성을 보호하면서 전체 연방정부 데이터 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치를 활용하는 원칙과 관행으로 구성된 20가지 전략을 제시 • (연방 데이터 전략 실행계획, '21) 데이터 거버넌스와 기획 및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6개 기관 과제와 5개 실무 커뮤니티 및 공유 솔루션과제를 제시* * ① 기관의 우선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과 접근 ② 데이터 거버넌스의 성숙화 ③ 데이터와 인프라 성숙도 ④ 직원의 데이터 스킬 제고 ⑤ 기관들의 오픈 데이터 계획 발표 ⑥ 데이터인벤토리 개선 ⑦ 인공지능과 자동화 ⑧ 범정부 차원의 대시보드와 인프라 구축 ⑨ 데이터 기술인력 개발 ⑩ 황무지 화재 연료 관련 기관 간 데이터 관리 ⑪ 지리공간 데이터 관련 실천 사항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5개년 국가 전략적 신흥사업 발전계획, '12) 빅데이터의 저장, 처리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선언 • (비전 2020: 과학기술 발전 동향 및 중국의 전략적 선택, '13) 빅데이터 분야를 '20년까지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요구하는 혁신 과학기술 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 전략을 제시 • (정보화와 산업화의 심도있는 융합을 위한 특별 실행계획 2013-2018, '13)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기업 및 공공부문의 효율 향상 및 국가 생산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빅데이터 산업 육성 계획 발표 •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강요, '15)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창업, 만인혁신(大眾創業, 萬人革新)'을 발표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개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정부의 서비스 및 사회관리 수준 향상 노력

구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기 5중전회, 제13차 5개년 계획, '16) 빅데이터를 국가전략 신흥산업 중 하나로 채택 •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 2016-2020, '17) 데이터 관리성 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표준화 기술을 응용하여 '20년까지 빅데이터 산업 매출 1조 위안을 달성하고, 글로벌 기업 10개 이상 및 500개 이상의 응용 서비스 기업 육성을 목표 • (기업 클라우드 도입 촉진 가이드라인 2018-2020, '18)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융합이 실물경제에서 결실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의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 • (산업 빅데이터 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20) 산업 빅데이터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 수집 가속화, 데이터 활용 심화,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등 7개의 방안을 제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티브 데이터 전략, '12) ICT 활성화 전략으로써 5대 중점 분야의 하나로 빅데이터 활용 특별부의 빅데이터 활용 기본 전략을 반영 • (전자행정 오픈데이터 전략, '12)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식 사용, 영리/비영리 목적을 불문한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포함하는 공공데이터 기본전략 발표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15) 익명 가공정보* 개념 도입 * (익명 가공정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정보를 의미 • (일본재흥전략 2016, '16)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빅데이터를 선정 • (미래투자전략 2017, '17) 새로운 사회의 인프라로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및 제도 방향 제시 • (분야 간 데이터 연계 기반 정비를 위한 방침, '18) 분야를 초월한 데이터 연계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 '18) 정부·지방단체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시 • (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 창조 선언·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 '19) 데이터 공유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기업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인센티브 제도 도입)하고 충무성 주관 공공·민간 통합 데이터 포털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공유·활용 저변 확대 위한 정책 수립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유럽집행위원회)의 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 for Europe의 16가지 핵심 실행 과제 중 하나로 '16년 말까지 데이터 경제 구축을 목표로 유럽연방 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 촉진을 위한 유럽 데이터 이니셔티브(Europe free flow of data initiative) 제안 • (데이터 주도 경제 결의안, '14) 유럽이 데이터 경제의 선도자로 등극하기 위한 초기 조치 등을 제안 •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 '17) 데이터 접근·분석·활용 강화를 통한 데이터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한 EU 내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 *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통한 보호 및 접근권 강화, 비개인정보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적·법적 기준 제시, 공공의료 데이터 통합시스템 개발, 지급결제서비스 지침 등 데이터 유형별 정책 제안이 포함

구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부문의 데이터 공유에 관한 가이드, '18) 데이터 기반 신사업과 혁신 창출을 위해 B2B, B2G 데이터공유 원칙, B2B 데이터 공유 가이드, B2G 데이터 공유 협력 체크리스트 등의 민간 데이터 공유에 관한 가이드 제공 • (개인정보보호규정 GDPR, '18) EU 내 합법적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보호와 책임을 강화 • (비개인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규정, '18) 데이터 처리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비개인데이터의 활용·저장·전송을 위한 가이드라인 구축을 권고 • (데이터 개방 지침, '19) 법률, 기술 및 재정적 제약을 최소화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데이터 개방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EU 회원국의 오픈데이터, 공공부문 정보의 재사용 촉진 장려 • (유럽 데이터 전략, '20) 데이터-에자일 경제를 맞아 향후 5년간 EU 데이터 경제의 정책 조치 및 투자 전략 제시 • (유럽 데이터 거버넌스법, '20) 유럽 전역의 데이터거버넌스에 관한 공동된 규칙 및 관행을 수립하여 데이터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EU 집행위원회) • (유럽 데이터법, '22) 제품이나 서비스의 부산물로 창출된 데이터에 대하여 제조사나 데이터 보유자(data holder) 외에 접근 가능한 주체와 권한의 범위/원천을 확립하는 목적에서 제정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전략위원회, '12) 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 전략위원회(Data Strategy Board) 설립 • (오픈데이터 전략, '12) 기업혁신부와 16개 부처간 협의를 통해 부처별 오픈데이터 전략을 발표하고 데이터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재정비 • (정보 경제 전략, '13) 중소기업의 온라인 활동 지원, 데이터 과학 등을 통한 온라인 경제 육성 추진 전략 발표 • (데이터 역량 강화전략, '13) 데이터 경제에서 영국의 리더십을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 정책의 명확성을 표현하기 위한 전략 발표 • (오픈데이터 전략, '14) 오픈데이터 전략('12) 일부 내용을 강조 및 보완 • (오픈데이터 로드맵 2015, '15) 데이터 활용 기회 제고와 데이터 활용 기업 육성, 신생기업 지원을 통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국가전반의 혁신을 도모 • (디지털경제법 2017*, '17) 연구목적 및 통계 작성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통계위원회의 포괄적 정보접근권을 법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경제법 2017 이전에는 교육, 부가세, 소득 등 분야별 데이터 공유가 필요할 때마다 '통계 및 등록서비스법(Statistics and Registration Service Act 2017)'에 관련 조항을 개별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조항 당 18-24개월 정도 소요되는 불편을 겪음 • (영국연구혁신기구*) 인공지능이 회계, 보험, 법률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사기, 감사 등) 완화 및 효율성, 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 개선 방안 프로젝트 창설

구분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는 영국의 비정부·공공기관으로 7개 연구회, Innovate UK, Research England를 통합하여 '18년 설립 •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보고서*, '18) 영국 경제 발전의 5가지 선결과제를 데이터 경제 중심으로 서술 * 5가지 선결과제로 데이터 소유권과 통제권에 대한 명확화, 개인데이터에 대한 보호 유지, 공공부문 데이터의 개방성, 데이터 상호운용 및 표준 강화, 안전하고 합법적인 데이터 공유환경 구축을 제안 • (국가데이터전략, '20)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기반, 데이터 기술, 데이터 활용 가능성, 데이터 책임성이라는 4개의 기준을 토대로 5가지 국가전략의 미션을 제시 * (국가전략) ① 경제 전반에 걸쳐 데이터의 가치를 실현, ② 성장을 지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유지, ③ 정부의 데이터 활용을 혁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 ④ 데이터 인프라의 회복과 데이터 보안을 보장, ⑤ 데이터의 국제적 흐름이 활성화되는 것을 선도 • (공공부문 데이터 공유, '22) 영국 의회는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에 대한 문서(POSTNOTE)를 발표하여 영국에서 공공 부문 데이터가 공유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데이터 공유에 대한 요구 사항과 관련 이점, 위험 및 장벽에 대해 논의

자료: 전자신문(202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1, 2022); 김병일(2022)을 참고하여 정리

이처럼 국내외에서는 공공 서비스 우선, 사회적 가치 실현, 데이터 결합 등의 목적을 표방하면서 데이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와 세부 내용의 차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통한 경제 진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지속가능한 구축, 개방,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제 2 절 데이터 개방 사례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기조에 따라 각 부처는 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데이터 제공을 위한 부처별 제도적/기술적 기반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 개방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국내외 방송통신분야 공공 및 민간데이터 제공자의 데이터 개방 사례를 통해 향후 방송통신분야에서 개방을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다.

1. 부처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및 성과

1) 공공데이터 개방 기반 현황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기조에 따라 각 부처는 데이터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개방 현황 및 성과를 조사하는 것에 앞서 데이터 제공을 위한 부처별 제도적/기술적 기반(지침/규정, 개방 시스템) 현황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등에 관한 지침·규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의 제11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이 제정되었다.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이 목적이며 모든 공공기관이 그 적용대상이 된다. 몇몇 개별 행정부처 및 청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하여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및 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데이터 관리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도모하고 있다. 별도로 공공데이터 관련 지침 내지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화업무 규정 등의 형태로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명시하고 있거나, 별도의 내부규정 또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따르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지침·규정 외에도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등의 형태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개별 부처 및 청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표 2-4〉 부처별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지침·규정 현황

지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관리 규정
국가보훈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통계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 훈령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을 정리

부처별 지침과 규정의 체계를 비교하여 공통점, 차이점, 특징을 살펴보았다.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가보훈처를, 관리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특허청을 중심으로 하였다.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체계는 대부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내용을 해당 조직의 성격에 맞추어 구성하였으며, 공공데이터에 한해서 제공·관리 등과 관련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용어 및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등 조직 업무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2-5〉 부처별 공공데이터 제공·관리에 관한 주요 지침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국가보훈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목적	목적	목적
정의	정의	정의
적용 및 관리범위	적용 및 관리범위	적용 및 관리범위
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공공데이터의 제공 원칙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의 역할	실무담당자의 역할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	실무부서의 역할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협의회 운영	공공데이터제공 신청의 접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공데이터 생성·수집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제공대상 여부의 확인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저작물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관리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제공방식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국가보훈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규정의 준용
처리기한	공공데이터의 등록	재검토기한
준용	공공데이터의 현행화	부칙 / 별지
운영세칙	공공데이터의 제공 매체	<p>주요 지침의 구성</p> <p>총칙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원칙 등</p> <p>관리체계 (또는 제공·관리 단계별 기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의 역할, 부서별 역할, 공공데이터협의회 등</p> <p>공공데이터 제공절차 공공데이터 생성·수집, 제공 기반 구축, 제공 신청 접수, 제공 방식, 제공 여부 결정, 통지, 제공중단 및 변경, 목록 제외, 제공비용 부담,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등</p> <p>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등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수립, 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 제공 금지 등</p>
재검토기한 설정	제공신청에 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부칙 / 별표 및 별지	제공비용의 부담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및 내용변경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등	
	공공데이터제공분쟁 조정	
	품질관리체계 구축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품질진단 및 개선	
	데이터 표준관리	
	연계데이터 관리	
	데이터 산출물 관리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품질관리 교육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준용	
	재검토기한	
	운영세칙	
	부칙 / 별표 및 별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을 정리

한편, 데이터 관리 규정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개별 부처 및 청의 특성을 반영(인사 관련 사항 및 업무 내용, 위원회 등의 구성, 시행계획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조직 업무의 개념을 적용)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 지침과의 차이점이었다. 또한, 규정을 수립한 부처에서는 공공데이터 외에도 각종 데이터를 규율하는 법제가 다수이므로, 체계 구성을 세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정은 지침에 비해 조직의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제반 데이터의 이용·제공 관련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2-6〉 부처별 공공데이터 제공·관리에 관한 주요 규정 체계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목적	목적	목적	목적
적용범위	정의	정의	정의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적용범위	적용범위
데이터총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기본원칙	기본원칙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	데이터총괄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임무	특허정보활용지원센터
정책분석팀장	데이터담당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 지정·임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기술지원	데이터 업무 담당자	생산부서의 임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수립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평가	심의위원회의 기능	데이터 관리·제공목록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데이터 관련 예산의 편성	데이터실무위원회	관리·제공목록 제외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역의 관리
데이터품질관리	수당 등	기상메타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식약 데이터 혁신 기본계획의 수립	데이터의 품질관리	비용부담
공공데이터 제공	식약 데이터 혁신 시행계획의 수립	데이터의 통계분석	공공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도입 및 운영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의 보존·폐기	공공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관리
데이터 등의 관리	데이터 관련 예산안 검토·협의	국가기후자료시스템 구축·운영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빅데이터의 활용	데이터 사업 등 사전협의	유관기관 공공데이터	준용규정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	성과평가	데이터 제공	재검토기한
협의회 설치	데이터 등록·제공	기상자료개방포털 구축·운영	부칙 / 별지
협의회 구성	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	관리·제공목록 외의 기상청 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등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5px;"> <p>주요 규정의 구성</p> <p>총칙</p> <p>데이터 종합·조정 및 추진체계 (또는 관리체계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조직 및 역할 등)</p> <p>데이터 등의 구축·제공 및 분석 기반 구축 (또는 데이터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 / 데이터 관리 업무 /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등)</p> <p>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 (또는 데이터 제공 활용 / 데이터 제공 업무 /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p> <p>위원회 (또는 협의회 /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 / 품질관리 등)</p> </div>
협의회 기능	공공기관 간 공동활용 신청 처리	데이터 제공중단	
회의 및 결과보고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제한 등	위원회의 설치	
의견의 청취	비용부담	위원회 구성	
수당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방지	위원회 회의 및 운영	
존속기한	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의결 사항의 추진	
부칙	식의약데이터포털 구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예방적 품질관리	데이터 관련 규정·지침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준용규정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재검토기한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	부칙 / 별표 및 별지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포상		
	존속기한		
	부칙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내용을 정리

그 외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 훈령」 등과 같이 해당 조직에서 다루는 데이터가 전문성을 가지는 경우, 데이터의 양이 방대한 경우, 데이터가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개방성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조직이 독립성을 가지는 경우, 데이터가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침이나 규정 여부에 상관 없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기능할 만큼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리 지침이나 규정 여부는 부처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단순 비교 결과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이나 규정, 훈령이 있는 부처가 없는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건 수가 많았다.

〈표 2-7〉 공공데이터 관리 규정(지침, 훈령) 여부에 따른 공공데이터 개방 건 수

구분	N	평균 공공데이터 개방 건 수 ²⁾	비고
공공데이터 관리 규정, 지침, 훈령	있음	19	321.37
	없음 ¹⁾	26	206.96

주: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웃라이어로 판단하여 분석에서 제외

주: 2) 부처별 공공데이터 개방 건 수는 2022.12.21.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의 파일데이터와 오픈 API의 합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여 분석

지침이나 관리 규정 여부가 공공데이터 개방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데이터 개방 건 수가 많아질수록 지침 혹은 규정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을 수 있다. 또한, 많은 개방 건 수가 높은 품질의 데이터 개방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혹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데이터 개방에 대해 부서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정부 부처는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에 대응하여 양질의 데이터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와 부가가치창출을 위해 산하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는 물론 타분야 데이터와의 융·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분석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보화 전략은 데이터의 구축 효율성을 증진하고 데이터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 고품질의 데이터 수집, 데이터 연계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개방하고자 하는 기관은 데이터 개방 제반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례로 문화재청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 개선을 위한 ISP(2021.6.7.~12.4)를 시행하였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2021년 3월에 발표한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에서 ISP 단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이 가이드는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을 위해 정보시스템 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인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양질의 데이터 확보·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축된 데이터 베이스는 운영시스템의 성능과 서비스 진행, 보안 등 다양한 사유로 데이터 품질 저하 요인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품질을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ISP, ISMP 등 계획 단계부터 품질 요구가 반영된 RFP는 고품질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유도하여 품질 관리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공공데이터법〉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중장기계획(‘20-’22)〉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7차 회의 (2019.12.24.) 심의 의결
- 추진과제2.1 원천데이터의 예방적 품질관리 강화
 - 주요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운영에 들어간 후에는 데이터 품질개선에 高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구축 前 단계(기획·발주단계) 품질점검 강화 추진

〈표 2-8〉 시스템 구축 시점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 비교

시스템 구축 후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전 품질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단계에서 제공중인 데이터의 품질을 관리하는 활동으로 품질개선을 위한 예산 부담이 크고 운영시스템은 품질개선 활동 곤란	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ISP, ISMP 등 ‘계획’ 단계부터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여 품질 요구가 반영된 RFP의 작성으로 고품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도

자료: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3)

이렇듯 공공데이터 개방과 정보화전략계획(ISP)과의 연동은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2) 부처별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정부 각 부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포털 내 국가데이터 맵을 구축하여 700여 개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방 가능한 데이터의 소재정보 및 연관관계를 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기부에서

는 데이터댐의 일환인 통합데이터지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민간 데이터를 쉽게 연계·활용하도록 지원(21)하고 있다. 통합데이터지도는 여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하도록 한 것으로, 16개 빅데이터 플랫폼과 6개 민간 및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AI 포털인 AI 허브(AI Hub)를 구축하여 누구나 AI 학습용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7월 기준 한국어, 영상 이미지, 헬스케어 등 381종에 걸쳐 데이터 약 11억 건을 공개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각 부처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공공데이터 개방은 누적 6만 7천여 건, 데이터 활용은 누적 3천 3백만 건 이상을 기록하였다.

[그림 2-2] 행안부 국가데이터맵 서비스



자료: 국가데이터맵 홈페이지

[그림 2-3] 과기부 통합데이터지도 개요도



자료: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표 2-9〉 '20~'21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주요 성과

기관명	주요 내용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개방 이행 실적 : (19) 242개 ⇨ (20) 1,302개 ⇨ (21) 1,564개 개방 완료 • 과기정통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정의서 제정(21.8월) • 과기정통부 기관 담당자가 알려주는 공공데이터 설명회 개최(21.8월) • 공공데이터 이해(4,728명), 표준화 및 품질관리,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321명)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개방 이행 실적 : (19) 273개 ⇨ (20) 7,527개 ⇨ (21) 1,632개 개방 완료 • 행안부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컨설팅으로 기관 표준(용어: 4,023개, 도메인: 161개, 단어: 4,692개) 정의, 메타데이터 등록 89건 • 행안부 기관 담당자가 알려주는 공공데이터 설명회 개최(21.8월) • 사업자등록번호 개방 추진을 통한 데이터 활용 및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 겨울철 상습결빙구간 등 신규 개방 71건, 중장기 개방 1,313건 완료 • 3단계이상 오픈 포맷 비중 93.9%로 확대 제공 • 데이터 품질관리 등 청년인턴을 통한 일자리 695명 창출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개방 이행 실적 : (19) 663개 ⇨ (20) 5,689개 ⇨ (21) 3,462개 개방 완료 • 국토부 대민서비스(61개 시스템) 품질오류신고 센터 운영 • 국토교통부 기관표준 용어(345개) 및 단어(62개) 개정 및 메타관리시스템 반영 • 국토부 기관 담당자가 알려주는 공공데이터 설명회 개최(21.9월) • 국토교통분야 창업 및 가명정보 결합 아이디어 공모전(6월), 해커톤(8월) 개최 • 3단계이상 오픈포맷 데이터 1,589건 제공(전체 98.7% 수준) • '국토교통 데이터 통합 채널 구축' 등 37건의 개방·품질사업 추진 • 국토분야 전담인력(122명) 및 국민·공공기관 직원 등 교육 실시(681명)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개방 이행 실적 : (19) 475개 ⇨ (20) 167개 ⇨ (21) 192개 개방 완료 • 아동학대 예방, 교통안전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비정형데이터 개방 확대 • 경찰청 메타데이터관리 시스템 도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모바일 전자문진표 개발·제공 • 도시교통정보센터의 교통 돌발정보, 소통정보 등 민간 제공(현대오토에버 등, 159건)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개방 이행 실적 : (19) 113개 ⇨ (20) 159개 ⇨ (21) 103개 개방 완료 • 정보 취약계층 대상 기상정보 전달 및 활용방법 대국민 교육(41회, 904명) • 라오스 태풍 감시·예측 통합플랫폼 구축 기술지원 및 역량 강화 실시(~'23) • 필리핀 기상수치 예보를 위한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10월)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알리미, 평생학습강좌 등 공공데이터 목록 1,129건 개방 • 학교기본정보, 역사DB 등을 활용한 교육분야 앱·웹 서비스 45건 개발 • 7개기관 27회 451명에 대해 품질·시각화 등 교육 및 네트워킹 추진

기관명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공간정보 등 4,621건(누적)의 공공데이터 개방 완료 • 해양수산물정보 공동활용 체계 등 8건의 데이터 표준화 추진 • 항만물류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22건의 해양수산물 관련 웹·앱서비스 개발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공통 데이터 표준 마련 등 8건의 개방 및 품질사업 추진 • 이동통신 3사와 협력 모바일신분증 서비스 등 10개기관, 10건의 시민사회,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 디지털 뉴딜 등 공공데이터 일자리 859명 창출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31개 DB 수준 진단 등 21개 개방 및 품질사업 추진 • 환경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7개 기관에서 21회에 걸쳐 1,040명의 교육 및 네트워킹 추진
특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산(IP) 정보에 대한 신규상품 개발, 연구목적 활용 등 증가 ※ 이용기관수 421개, 이용건수 1,233백만건, 상품활용수 1,732개 등 • 특허공보 등을 활용하여 23건의 특허 관련 웹·앱서비스 개발

자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2021~2022)

2. 국내외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1)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기준 현재 총 38건(파일 데이터 34건, 오픈 API 4건)을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공개하고 있다.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는 43건을,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현재 파일 형태 15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 집계표 형태(매크로데이터²⁾)이며, 마이크로데이터³⁾를 제공하는 사례는 제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비스 채널은 온라인 상에서 집계표를 조회하거나 이에 대한 그래프 등의 방식으로 시각화 정보를 이용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2) Macrodata: 마이크로데이터를 기준에 따라 집계한 자료를 말함

3) Microdata: 통계조사 원시데이터(raw data)에서 개인정보, 입력오류, 논리오류 등을 수정한 조사개별단위의 자료를 말함

〈표 2-10〉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기관	No.	공공데이터명	제공포맷	비고 (개방연도)
방 송 통 신 위 원 회	1	심결정보	CSV JSON + XML	2013
	2	도서 정보	CSV JSON + XML	2014
	3	방송사업자 허가 현황	CSV JSON + XML	2014
	4	방송통신 정책연구정보	CSV JSON + XML	2014
	5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자료	XLS	2014
	6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	CSV	2015
	7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국문)	PDF	2015
	8	방송통신위원회 연차보고서(영문)	PDF	2015
	9	장애인방송 편성 현황	CSV JSON + XML	2016
	10	게시판 스팸 실시간 차단 서비스	오픈 API	2016
	11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현황	CSV JSON + XML	2017
	12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현황	CSV	2018
	13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정보	CSV	2018
	14	시청자평가지수(KI) 정보	CSV	2018
	15	시청점유율 현황	CSV	2018
	16	방송평가 정보	CSV	2018
	17	방송산업 실태조사 현황	XLS	2018
	18	WiFi 역사 정보	CSV	2019
	19	WiFi 측위 정보	CSV	2019
	20	역사별 WiFi AP의 정보	CSV	2019
	21	휴대폰 가격 국내외 비교 정보	LINK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2020
	22	고정형 TV(실시간, VOD) 조사	CSV	2021
	23	스마트폰, PC 시청기록 조사	CSV	2021
	24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현황	CSV JSON + XML	2021
	25	OTT 서비스 이용 시 즐겨보는 장르	CSV JSON + XML	2022
	26	해외방송시장조사_OTT 서비스 시청 시간	CSV JSON + XML	2022

기 관	No.	공공데이터명	제공포맷	비고 (개방연도)
	27	해외방송시장조사_OTT 서비스 시청 비율	CSV JSON + XML	2022
	28	해외방송시장조사_OTT 서비스 시청 행태	CSV JSON + XML	2022
	29	해외방송시장조사_선호하는 OTT 시청 유형	CSV JSON + XML	2022
	30	해외방송시장조사_방송서비스와 OTT 중 주이용 서비스	CSV JSON + XML	2022
	31	해외방송시장조사_유료 OTT 서비스 가입 행태	CSV JSON + XML	2022
	32	해외방송시장조사_유료 OTT 서비스 비가입 이유	CSV JSON + XML	2022
	33	해외방송시장조사_OTT 서비스 주 이용 시청기기	CSV JSON + XML	2022
	34	해외방송시장조사_주이용 OTT 서비스	CSV JSON + XML	2022
	35	해외방송시장조사_OTT 서비스 주 이용 장소	CSV JSON + XML	2022
	36	방송산업 실태조사 정보	오픈 API	2022
	37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정보	오픈 API	2022
	38	KI시청자평가지수 조사 정보	오픈 API	2022
	한 국 방 송 광 고 공 사	1	방송통신광고산업통계자료	PDF
2		등록 광고회사 현황	CSV JSON + XML	
3		광고박물관 소장 광고소재(영상광고) 현황	CSV JSON + XML	
4		광고박물관 소장 광고소재(인쇄광고) 현황	CSV JSON + XML	
5		광고박물관 소장 광고소재(라디오광고) 현황	CSV JSON + XML	
6		광고박물관 소장 광고소재(기타광고) 현황	CSV JSON + XML	
7		광고박물관 소장 광고소재(옥외광고) 현황	CSV JSON + XML	
8		광고박물관 이용자 현황	CSV JSON + XML	
9		광고경기전망지수(KAD) 월간보고서	PDF	
10		광고경기전망지수(KAD) 연간 전망 보고서	PDF	
11		프로그램몰입도조사	CSV JSON + XML	
12		연구보고서 목록	CSV JSON + XML	
13		광고총서신서 목록	CSV JSON + XML	
14		제작 방송공익광고 주제별 현황	CSV JSON + XML	
15		제작 인쇄공익광고 주제별 현황	CSV JSON + XML	
16		소비자행태조사 연례보고서	PDF	
17		소비자행태조사 원시데이터 정보	XK SX	

기 관	No.	공공데이터명	제공포맷	비고 (개방연도)
	18	소비자행태조사 통계데이터 정보	XKSX	
	19	방송콘텐츠 국내 인터넷반응 지표	XLS	
	20	방송콘텐츠 해외 인터넷반응 지표	PDF	
	21	마케팅조사 인포그래픽 자료	PDF	
	22	공익광고DB	CSV JSON + XML	
	23	공익광고 주제선정 관련 데이터	XKSX	
	24	공익광고 효과평가 관련 데이터	XLSX	
	25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교육과정	CSV JSON + XML	
	26	혁신형 중소기업 제작비지원사업 수행정보	CSV JSON + XML	
	27	광고박물관 소장 광고유물자료 목록		
	28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공모전 연도별 수상작품 목록	CSV JSON + XML	
	29	공익광고 국내외 수상실적 현황	CSV JSON + XML	
	30	온라인 교육강의	CSV JSON + XML	
	31	방송통신광고비조사 영문보고서	PDF	
	32	광고경기전망지수(KAD) 동향 및 전망 추이 데이터	CSV	
	33	방송통신광고비 광고시장규모 데이터	CSV	
	34	광고박물관 송파구박물관나들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CSV JSON + XML	
	35	AISAC 광고소재명별 광고 정보	CSV	
	36	AiSAC시스템 AI 인식결과 및 광고소재명별 키워드	CSV	
	37	광고박물관 견학 및 특강 프로그램 운영 현황	CSV JSON+XML	
	38	고정형TV 실시간 시청점유율 보고서	PDF	
	39	문화콘텐츠 다양성 조사보고서	PDF	
	40	고정형TV VOD 시청기록 조사 결과보고서	PDF	
	41	스마트폰 PC 시청기록 조사 결과보고서	PDF	
	42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연간 보고서	PDF	
	43	AiSAC 이용자 제작 스토리보드	PDF	
시 청 자	1	연구보고서	PDF	
	2	백서	PDF	
	3	문화축제	CSV JSON + XML	

기관	No.	공공데이터명	제공포맷	비고 (개방연도)
미디어 재단	4	체험형미디어교육	CSV JSON + XML	
	5	상설미디어교육	CSV JSON + XML	
	6	스마트 미디어 교육	CSV JSON + XML	
	7	장애인방송 편성사무 평가 정보	CSV JSON + XML	
	8	미디어교육 단체지원 현황	CSV JSON + XML	
	9	공동체미디어교육	CSV JSON + XML	
	10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현황	CSV JSON + XML	
	11	특수학교 미디어교육지원현황	CSV JSON + XML	
	12	발달장애인용 맞춤형 콘텐츠 제공 현황	CSV JSON + XML	
	13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지원 현황	CSV JSON + XML	
	14	학교 동아리 미디어교육 지원 내역	CSV JSON + XML	
	15	공동체라디오제작지원현황	CSV JSON + XML	

자료: 공공데이터포털(2022.11.30.)

3) 해외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해외 기관에서도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17개 데이터세트(data set)의 다운로드 서비스와 공공 및 민간 부문 개발자를 위한 API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은 홈페이지에 9개 주제별로 44개 데이터세트(data set)을 분류하여 공개하고 있다. 프랑스의 시청각 및 디지털 통신 규제 기관(Arcom)은 수행한 연구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오픈데이터플랫폼을 통해 공개한다. 캐나다 방송위원회(CRTC)는 방송 및 통신 부문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및 공유한다. 데이터수집시스템(DCS, Data Collection System)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며 주요 제공 정보로는 커뮤니케이션시장보고서(CMR, Communications Market Reports)와 방송산업 재정 요약(Broadcasting financial summaries)이 있다. 간단한 계획 및 보고서는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제공하며, 공개 데이터세트(data set)는 캐나다 오픈데이터포털(<https://open.canada.ca/en>)에서 검색 가능하다.

〈표 2-11〉 해외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기관	No.	공공데이터명
미국 미연방 통신 위원회 (FCC)	1	2,948 Listed Test Firms
	2	Accredited Test Firms
	3	Automated Reporting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4	Cable Operations and Licensing System
	5	Cable Communities Registered with the FCC
	6	Consolidated Public Database System -- Broadcast Radio and TV
	7	Equipment Authorization Grantee Registrations
	8	FM Service Contour Data Points
	9	International Bureau Application Filing & Reporting System
	10	License View Database
	11	Raw HTML files hosting data for ECFS
	12	Section 43.61 International Traffic Data
	13	TCB Designating Authorities (TDA)
	14	Telecommunication Certification Bodies (TCB)
	15	TV Service Contour Data Points
	16	Test Firm Accrediting Bodies (TFAB)
	17	Universal Licensing System
영국 커뮤니 케이션 위원회 (Ofcom)	1	BBC Covid-19 research
	2	BBC Teens Tracker 2020-21
	3	Broadcast radio stations
	4	Broadcast radio transmitters: technical parameters
	5	Media Nations
	6	TV access services
	7	Viewers' experience of television reception
	8	Communications Market Report data
	9	Telecoms and pay-TV complaints
	10	Gifts and hospitality register
	11	Audio description awareness survey data
	12	Consumer mobile experience
	13	Consumer issues survey: Experience of nuisance calls

기관	No.	공공데이터명
	14	Disability consumer research
	15	Internet users' concerns about and experience of potential online harms
	16	Media tracker
	17	News consumption in the UK
	18	PSM tracker
	19	PSB tracker
	20	Quality of customer service
	21	Switching tracker
	22	Technology tracker
	23	Children's media literacy
	24	Adults' media literacy
	25	Postal volumes and revenue
	26	Residential postal tracker
	27	Business postal tracker
	28	Amateur radio call signs
	29	Mobile signal strength measurement data from our spectrum assurance vehicles
	30	Mobile signal strength measurement data from Network Rail's engineering trains
	31	UK radiowave propagation measurement data for frequencies below 6 GHz
	32	Wi-Fi airborne measurements
	33	Wireless Telegraphy Register
	34	Spectrum space strategy
	35	UK frequency allocation table
	36	UK spectrum map
	37	UK (inhabited) Landmass Definition For Geographic Voice Coverage Obligation
	38	5.8 GHz registered terminals
	39	Connected Nations
	40	Scams
	41	SMEs and communications services
	42	Mobile matters
	43	Telecommunications market data tables
	44	UK home broadband performance

기관	No.	공공데이터명
프랑스 시청각 및 디지털 통신 규제 기관 (Arcom)	1	Online music listening practices - October 2020
	2	Barometer of cultural goods uses on the Internet - April/May 2017
	3	Metadata offers VOD and SVOD
	4	Study on the risks incurred on illegal sites - January/February 2017
	5	Hadopi-CSA study - Voice assistants and connected speakers, the impact of the voice on the offer and cultural and media uses - May 2019
	6	Graded Response Statistical Tracking Table
	7	Barometer of uses of cultural goods on the Internet - May 2013
	8	Barometer of uses of cultural goods on the Internet - October 2012
	9	Hadopi 2011-2012 annual report: indicators appendix
	10	Study of perceptions and uses of digital books - June/July 2014
	11	Barometer of the consumption of dematerialized cultural goods 2020
	12	Barometer of the consumption of dematerialized cultural goods 2019
	13	Study on video games - October 2014
	14	Barometer of the legal offer of dematerialized cultural goods - March 2014
	15	Barometer of the legal offer of dematerialized cultural goods - September 2013
	16	Barometer of uses of cultural goods on the Internet - May 2014
	17	Barometer of the legal offer of dematerialized cultural goods
	18	Offrelégale.fr: list and description of published platforms, June 2014
	19	Barometer of uses of cultural goods on the Internet - October 2013
	20	Study on protected video games - July 2013
	21	Offrelégale.fr: list and description of published platforms, December 2013
	22	Hadopi 2012-2013 annual report: indicators appendix
	23	PUR label: data from labeled platforms, June 2013
	24	PUR label: data from labeled platforms, January 2013
	25	Cultural goods and Internet uses: practices and perceptions of French Internet users - May 2011
	26	Cultural goods and Internet uses: practices and perceptions of French Internet users - January 2011
	27	Study on strategies for accessing dematerialized works - May 2018
	28	Barometer of the legal offer of dematerialized cultural goods - January 2017
	29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Frequency Plans

기관	No.	공공데이터명
(CRTC)	1	Television viewing and ownership statistics
	2	List of Broadcasting Distribution Undertakings
	3	Television program logs
	4	Statistical and Financial Summaries for Broadcasting Sector2021
	5	Competitive Local Exchange Carriers Group

	46	National Broadband Data

주: 프랑스 Arcom 공공데이터명은 영어로 변환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3. 국내외 방송통신분야 민간데이터 개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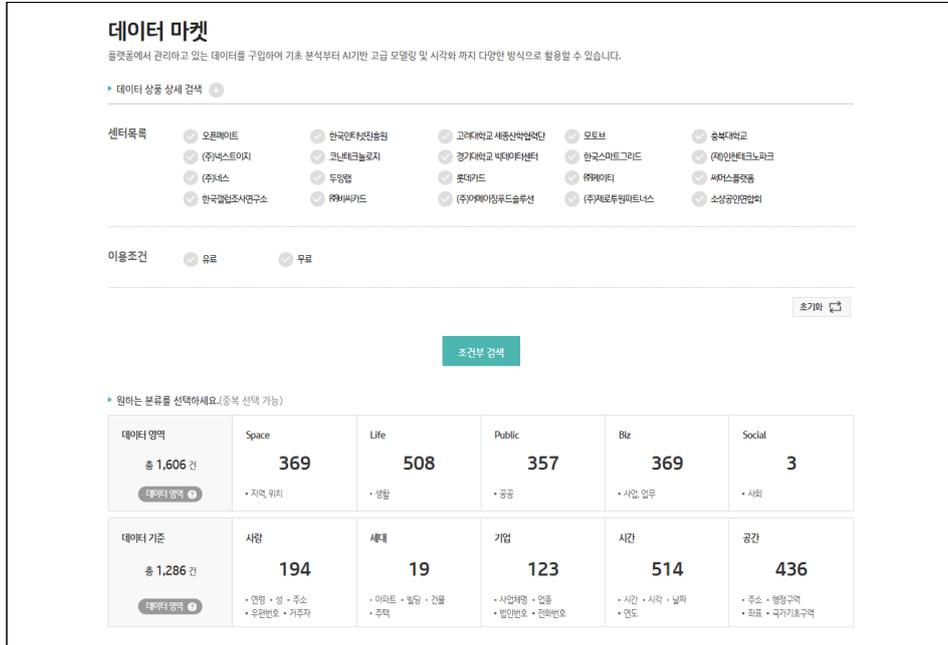
통신사, ICT 기업 등 방송통신분야 민간기업 또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기업 내에서 고객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 하던 서비스를 점차 사업화하면서 유료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일부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 하는 데이터는 협의하에 부처에 제공한다.

1) 통신사 데이터 개방 현황

KT는 2020년 KT 연구개발센터에 통신 빅데이터 오픈랩을 개소하고 누구나 무료로 직접 데이터를 가공/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BC카드, 넥스트이지 등 14개 기관과 협력해 유동인구, 소비, 상권, 여행 등 다양한 생활 데이터 및 이를 분석한 결과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분석 리포트, 컨설팅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안전한 보안환경에서 데이터를 연구/분석할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사용자 수준별 맞춤형 교육 및 데이터 분석 기술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분야 별 빅데이터 전문가의 자문 및 비즈니스 멘토링 서비스도 진행하였다.

통신 빅데이터 오픈랩은 현재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무료 개방, 오프라인 공간 및 맞춤형 교육 제공 등의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데이터 공급자와 데이터 수요자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용자는 플랫폼 내 데이터 마켓에서 유료 또는 무료로 데이터를 구매 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4] KT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마켓



자료: 통신빅데이터플랫폼 홈페이지(최종 접속: 2022.12.2.)

나아가 KT는 2022년 9월 주요 지역(POI·Point of Interest)의 실시간 인구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인구 데이터를 서울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기지국에서 수집된 휴대폰 신호를 집계·가공해 특정 지역에 존재하는 인구를 추정할 수 있어, 주요 장소별 인구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신속하고 선제적인 정책 수립과 대응체계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KT로부터 실시간 인구데이터를 제공받으면 이를 교통·환경 분야의 공공데이터와 융합해 서울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개발·개방하고 생활 속 방역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013년 10월 빅데이터 허브를 통해 데이터를 공개했고, 2019년에는 행안부와 함께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공공적으로 활용할 것을 발표했다.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데이터 기반의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 데이터 기반 행정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티맵(T-Map), 유동인구, 미세먼지 등 SK텔레

콤의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석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민간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 SKT 데이터를 한시적으로 공유, 개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창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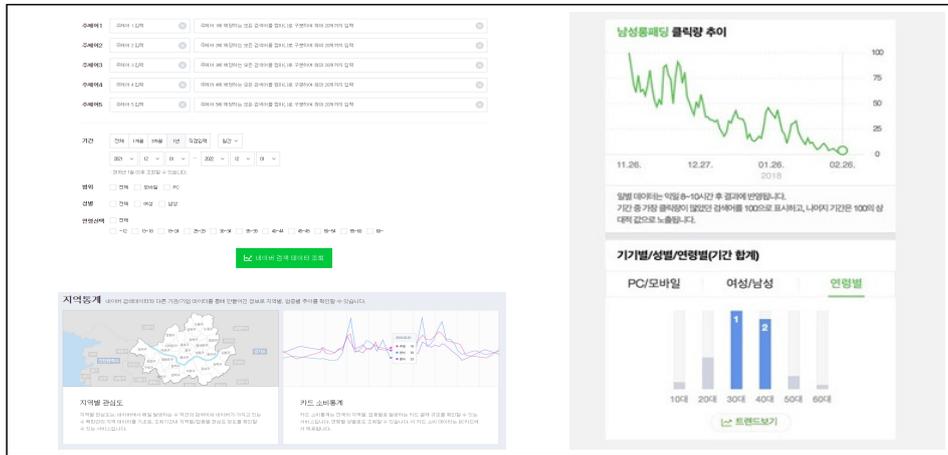
2022년 7월, SK텔레콤은 거주, 이동, 체류 관련 통계화된 익명정보를 API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으로(지오비전 퍼즐), 기관, 기업들이 쉽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밀키트처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도부와 데이터 카탈로그로 구성되었으며, 업로드된 데이터를 전부 또는 일정량(상세데이터)을 API 형태로 무료 제공하고 있다.

LGU+는 2022년 4월, 소비자 분석 플랫폼 데이터플러스를 출시하여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데이터플러스는 LG유플러스가 보유한 고객 특성, 미디어소비 정보, 이동패턴 등을 기반으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수요를 분석해 사업전략을 수립·실행하는데 필요한 인사이트·데이터 마케팅 채널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다. 데이터나 고객 채널이 부족한 기업,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분석, 고객 이해, 전략 수립·개선, 데이터마케팅 캠페인 수행, 성과 분석까지 연결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 유통, 제조, 문화 등 산업별로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고 고객사가 보유한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활용도 및 신뢰도를 향상할 계획을 밝혔다.

2) 플랫폼사 및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개방 현황

네이버는 2020년 말 규제 등으로 공개하기 힘든 데이터를 제외한 네이버 핵심 데이터를 대거 원본으로 제공하였다. 네이버클라우드에서 외부 기업들이 분석용으로 쇼핑이나 검색 같은 네이버 핵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클라우드 데이터박스를 공개했으며, 이를 글로벌 회사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무료 데이터 조회서비스인 네이버 데이터랩은 쇼핑 분야별 클릭 추이와 분야별 검색어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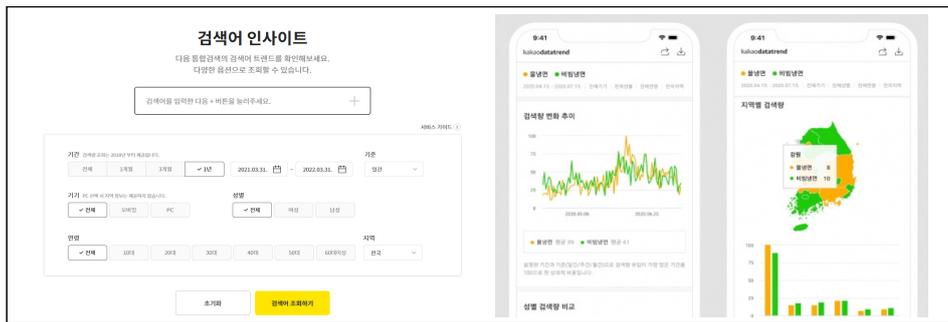
[그림 2-5] 네이버 데이터랩



자료: 네이버 데이터랩 홈페이지(최종 접속: 2022.12.2.)

카카오는 2018년 빅데이터를 개방하여(아레나) 머신러닝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2020년부터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자유롭게 살펴보고 참고할 수 있는 카카오 데이터트렌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다음(Daum)의 통합 검색어 정보를 기간, 기기, 성별, 연령, 지역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최대 5개의 검색어를 동시에 입력해 각 검색어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할 수 있고 모든 데이터는 차트 형태를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한 내용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직접 데이터를 가공해 연구나 리서치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2-6] 카카오 데이터트렌드



자료: 카카오 데이터트렌드 홈페이지(최종 접속: 2022.12.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통신 데이터는 정부와 해당 기업이 데이터 공개의 주체가 되나,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공개 및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표적인 방송 데이터인 영상 데이터는 한국데이터거래소(KDX)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거래되고 있다.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500시간 분량의 AI 학습용 영상 데이터가 제공되며, 매경미디어 그룹 MBN 방송 동영상은 별도의 서비스 카테고리 제공하고 있다.

제3절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본 절에서는 개방된 데이터가 어떤식으로 분석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살펴본다.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의 자체적 혹은 결합 활용이 어떻게 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 개방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활용 사례는 또한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 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공공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공공데이터는 공공서비스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예로 재난 문자(혹은 안전안내문자)가 있다. 정부는 재난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재난 대응 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며, 재난문자 송출 현황에 대한 데이터는 효과적인 재난문자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다 다양한 공공 서비스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공공 데이터의 활용은 효율적 행정 업무를 가능케 하며, 교육과 복지 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예측을 통한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대형 재난을 사전에 진압하기도 하며, 효과적인 취업 지원에 활용되기도 한다.

〈표 2-12〉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사례

분야	사례	
공공 행정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징수시 200여 종에 이르는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하는 데에 약 3시간이 소요되고, 매년 40억 원의 비용 소요. • 빅데이터 분석으로 납부가능성을 미리 예측해 체납액을 징수
	신속정확 효율적 민원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정차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생활불편신고앱의 민원 유형 자동 분류를 통한 서비스 개선 • 데이터 기반 단속차량 운영 경로 최적화를 통한 단속 효율화
교육 복지	공동주택 돌봄수요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신축 전 초등학교의 돌봄 수요 예측 • 돌봄시설 규모 산정과 돌봄시설 확충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이동권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배차 알고리즘 개발 • 공차 운행 시간 및 최초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대기시간 감소 • 수요예측치를 반영한 시간대별/차고지별 차량 대수 배분
	복지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의 복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행정 구현 • 맞춤형 복지정책, 효율적 복지행정 실현 • 위기가정 선제지원
재난 안전 및 보건 의료	산불 예방과 피해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수 도출, 용수시설물 격차 해소 •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대형 화재 방지 •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및 효율적 운영 지원 • 재산 및 환경 피해 최소화
	맞춤형 교통안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안전 관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운수안전 컨설팅 지원 시스템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체계화 • 도로안전 평가, 운수회사의 안전등급 산정과 위험도 지표 추출, 교통수단 안전점검 통합 서비스 제공
	맞춤형 치매 진단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치매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조기진단을 통한 치매 관리율 향상 가능
산업 고용	맞춤형 취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효과적 취업 지원 • 다차원 취업 패턴분석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채용패턴 분석을 통한 기업유형별 정보 제공, 맞춤형 취업준비 가능

자료: 행정안전부(2021)의 내용 중 발췌하여 정리함

공공데이터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를 갖지만 민간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민간기업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개발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제공 어플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건강정보심사평가원은 판매처별 입고량, 판매량 등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제공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지리정보와 결합한 뒤 API를 공개하였다. 이를 민간에서 활용하여 이틀만에 30여 개의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를 제공하는 어플과 사이트를 개발하였다. 이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적 마스크의 수요와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것이다.

해외에도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여 안전, 사회 통합, 지역사회, 환경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례가 존재한다.

〈표 2-13〉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과 사회적 가치 실현 사례

분야	사례	
안전	Night Street Advisor (일본)	일본의 LinkData는 나고야시가 제공하는 가로등 공공데이터 10만 개를 활용, Night Street Advisor라는 서비스를 통해 나고야시내 밤길의 밝기를 구글맵상에 표시, 보행자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지원
사회 통합	BlindSquare (핀란드)	Blindsquare는 도시 주요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시 정보 서비스. 정부가 공개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
지역 사회	Opportunity Spaces (덴마크)	SpaceEngagers는 도시의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활용 부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공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험
환경 지속성	Insectforecast (미국)	insectforecast는 기상 패턴, 토양 온도, 적산 온도 및 해충 포획수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 및 캐나다 남부 주요 재배 지역에서의 해충 발생 상황 감시

자료: 김정미 외(2018)를 참고하여 작성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공개도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분야에서는 영상 데이터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특히 AI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영상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공개 및 활용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구축한 AI 인프라 통합 플랫폼인 AI 허브에서는 12월 20일 기준 영상 이미지 데이터 78종(이미지 58종, 비디오 20종, 텍스트 6종, 오디오 2종, 3D 3종, 센서 1종)을 개방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들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거나 서비스를 고도화 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수어 영상은 청각 장애 가족을 위한 AI 셋톱박스 수어 교육 서비스 개발에, 농인 승객을 위한 배리어프리 택시 및 수어 인식 지하철 안내 서비스에 활용되었다. 원시 영상 가면 배경 및 크로마키 배경의 원시 영상 1,500시간 이상, 변조 모델 6종에 대한 영상 데이터 625시간 이상, 15만 개 이상은 딥페이크 탐지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영상에서 추출한 주요 장면 데이터세트(data set) 4,000건을 활용하여 얼굴 영상 분석을 통한 만족도 측정 서비스, 임신부를 위한 표정 인식 기반 정서 관리 앱이 개발되었다.

2. 민간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례

민간기업은 업무 효율을 증진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해왔다. 특히 2020년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마이데이터 산업에 진출하였으며, 고객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에 제공하던 개인자산관리의 고도화에 우선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카드권에서는 이종데이터의 결합을 통해 종합 생활 금융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면서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빅테크, 핀테크 기업 역시 중장기적으로 의료, 통신, 유통 등의 비금융권 분야 마이데이터 수집 범위 확대를 고려하면서 종합 플랫폼 비즈니스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개인 중심 의료 데이터 통합 및 활용 지원 시스템(마이 헬스웨이, My Healthway) 구축이 대표적이다. 2021년 2월부터 구축을 시작한 이 시스템은 2022년 9월 서울, 부산지역 24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개통하였다.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은 건강검진 기록이나 여러 병원에 흩어져있는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진료를 받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앓고 있는 질병이나 복용중인 약 정보를 모아 적합한 식단 또는 운동 방법을 제시하거나, 질병을 예측하여 예방하는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통신업계는 가입자의 통신 기록, 결제 행태, 위치 이동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마이데이터 사업에 강점을 갖고 있다. 통신분야는 이동통신 3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확보하고, 통신과 금융 데이터를 연계하여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공공과 민간에서는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동종 산업간 데이터 뿐 아니라 공공 데이터, 이종산업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서비스 개선, 사업 영역 확대, 사회 가치 실현을 하고 있다.

〈표 2-14〉 마이데이터 서비스 전략 및 사례

분야	사례	
	은행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 기존 자산관리 서비스의 고도화 및 그룹 계열사 정보와 연계 모델 운영 등으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생활편의성 제공으로 플랫폼 기반 확대를 추진 계획 • (KB 국민) 시니어 고객층 대상의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강점이 있는 부동산정보 등의 서비스를 강화 • (신한)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 특화 • (NH농협) 개인자산관리 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정부지원금 추천 서비스와 범 농협 데이터 활용을 차별화 포인트로 추진
금융	카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한) 고객 일상 속 DNA(Daily life-New discovery-Amazing save) 생활 플랫폼 구현 • (국민) 고객소비패턴에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조언하는 큐레이션 기능 강화 • (우리) 현재 은행, 카드 중심에서 증권, 보험 등으로 조희 서비스를 확대, 통신, 유통, 의료 분야 등을 포함 생활편의 및 결제 서비스를 통합한 종합 플랫폼 확대
	빅테크, 핀테크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파이낸셜) 정교한 금융 서비스 제공, 신용관리 서비스 시작 • (NHN 페이코) 통합조회, 신용관리 서비스, 추천 서비스 고도화 및 2030세대 특화 금융 플랫폼 • (뱅크샐러드) 개인자산관리 고도화 및 라이프 영역의 신규 서비스 지속 출시 예정

분야	사례	
보건복지	의료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대학교병원: 헬스아바타 빈즈) 환자가 동의한 개인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정보 교류 플랫폼 개발, 라이프로그 데이터와 융합하여 개인 맞춤형 코칭 서비스 • (강남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 처방전 등의 데이터를 이용한 영양 건강 식단 추천 서비스
	헬스케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케어미) 개인의 유전자 분석 정보, 건강 기록,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라이프로그 등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예측 결과 제공 • (메디팡팡)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진료 기록을 모아 보여주는 앱으로 병원 옮길 시 소견서 없이 앱에 저장된 기록을 전달 가능, 건강기록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 보험금 청구나 가입 심사가 가능 가능
통신	통신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K텔레콤) 개인의 재무지표를 활용한 맞춤형 재무 안내 서비스 고안 • (KT)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점수 부스터, 통신 요금제 맞춤 추천, 통신 제휴카드 이용실적 안내 등 기존 통신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편의 서비스 제공 계획 • (LGU+) 금융 데이터와 통신 빅데이터를 연계해 개인 맞춤형 금융 혜택을 알려주는 형태의 서비스 제공 계획

주: 보건복지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은 실증사업 중심으로 정리
 자료: 노현주(202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2.5); 뉴스 기사를 KISDI가 요약하여 작성

제 4 절 소 결

이상에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데이터 선순환을 통한 경제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공공데이터의 정보의 규모 및 정확성, 타분야 데이터와 이종결합 시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민간데이터에 관해서도 데이터3법을 개정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초에 기반하여 데이터 개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행안부는 국가 데이터맵을 구축하여 부처별로는 행정처리 과정에서 생성된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700여 개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방 가능한 데이터의

소재정보 및 연관관계를 쉽게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기부에서는 통합 데이터지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민간 데이터를 쉽게 연계·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며 AI 포털인 AI 허브(AI Hub)를 구축하여 누구나 AI 학습용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부처별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2021년 기준 데이터 개방은 누적 6만 7천여 건, 데이터 활용은 누적 3천 3백만 건 이상을 기록하였다.

방송통신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 데이터의 개방도 이루어져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11월 30일 기준 총 38건(파일 데이터 34건, 오픈 API 4건)을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공개하고 있으며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분야 데이터의 개방은 방송통신분야 기업 및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통신사와 ICT 기업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기업 내에서 고객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던 서비스를 점차 사업화하면서 유료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일부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는 협의하에 부처에 제공한다. 한국데이터거래소(KDX)에서는 방송 데이터인 영상 데이터를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례를 통해 이러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는 자체적으로 혹은 결합을 통해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데이터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또한 발견하였다. 제도적, 기술적 측면에서 데이터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데이터 개방, 품질 관리, 활용 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규정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또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부처는 그 외 부처에 비해 데이터 개방 건 수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혹은 규정이 데이터 개방에 대해 부서별 업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데이터 품질 확보의 측면에서 정보화전략계획(ISP)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에 대응하여 부처는 양질의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성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산하기관과의 데이터 공유는 물론 타분야 데이터와의 융·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분석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 때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발굴 및 개방, 범정부적 국가단위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축 효율성을 증진하고 데이터 품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 관리 지침 혹은 규정이 부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품질의 효율적인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 수립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제3장 데이터 개방 수요 조사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용자들로부터 데이터 개방에 관한 의견을 설문조사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청취하였다. 데이터 수요 조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검토하였고, 연구진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하여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제1절 수요 조사

1. 조사 개요 및 목적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공공데이터 게시판을 통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공표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분야의 공공데이터는 개방된 데이터의 종류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게시판을 통해 개방하고 있는 데이터는 38건으로, 그 중 파일데이터가 34건이며, 민간의 서비스 발굴에서 활용도가 높은 오픈 API(서비스) 형태는 4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통신·플랫폼 기업이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공익을 위해 공유되는 데이터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분야 데이터의 잠재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개방·유통·활용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방송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실무진은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연구진에서는 조사 결과와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분야 데이터에 관한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방송통신분야 데이터를 활용하였거나 활용 계획이 있는 기업 실무자와 연구자 5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서 2022년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총 2022년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13명 응답자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며, FGI 응답자는 산업계 7명, 학계 5명, 공공 1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3-1〉 이해관계자 수요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개요

구분	설문조사	그룹 인터뷰
조사대상	방송통신분야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획중인 사업자 및 연구자	
조사규모	51명(공공 15.5%, 산업 57%, 학계 27.5%)	3개 그룹(총 13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전문 모더레이터 진행하여 FGI 진행

설문조사 내용은 소속, 기업정보, 연구분야 등의 응답자 특성 항목과 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기획)한 서비스 및 데이터 종류, 수집 방식 및 출처, 원하는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의 개선의견 등의 데이터 수요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방송통신분야와 관련한 정부 건의사항도 포함되었다.

FGI는 설문조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송통신분야의 데이터 활용 경험을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로 구분하여 청취,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하지 못한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 3-2〉 설문조사 내용

구분	세부항목
응답자 기록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기업 • 직위 • (기업) 종업원 수 및 데이터 직무 관련 종업원 수 • (기업) 소속 업권 및 데이터 관련 서비스 업권 • (학계) 연구 분야

구분	세부항목
데이터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용하여 제공/기획중인 서비스 • 현재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 종류/출처/수집방식/활용한 연구(서비스) • 제공받고 싶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데이터 • 제공받고 싶은 민간기업의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 활용 희망하는 데이터 수집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기타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관련 정부 건의 사항

〈표 3-3〉 FGI 조사 내용

구분	세부항목
좌담회 목적 및 진행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기업 • 직위 • (기업) 종업원 수 및 데이터 직무 관련 종업원 수 • (기업) 소속 업권 및 데이터 관련 서비스 업권 • (학계) 연구 분야
참석자 및 서비스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회사의 대표 서비스/상품 • 주요 고객사 및 매출 현황 • 소속 회사의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용 서비스 • 서비스 자체 개발 여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천 데이터의 출처 • 서비스의 주요 유통 채널 • 서비스 운영 시 데이터 활용 방식 • (학계) 연구 시 주 활용 데이터 분야 • (학계) 공공/민간 데이터 활용한 산학 프로젝트 경험 여부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및 수요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 • 공공데이터 잠재 수요 • 방송 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 및 수요 • 통신 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 경험 및 수요
민간데이터 활용 현황 및 수요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데이터 활용 경험 • 방송 분야의 민간데이터 활용 경험 및 수요 • 통신 분야의 민간데이터 활용 경험 및 수요
추가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 방향

제 2 절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총 51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공공부문 종사자는 8명(15.5%), 산업계 29명(57%), 학계 14명(27.5%)이 참여하였다.

기업 응답자 중 '전체 종업원 수가 1,000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51~299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응답자 중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용 경험(활용 중, 활용 경험 있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9%로서 응답자 과반 이상이 방송통신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한 경험이 있어 해당 분야의 관여도가 높은 응답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방송통신분야 데이터와 관련하여 높은 이해에 바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4〉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전체		(51)	100.0	
응답자/응답 기관	공공	(8)	15.7	
	산업계	(29)	56.9	
	종업원 수	10인 미만	(2)	5.1
		10~50인	(4)	10.3
		51~299인	(12)	30.8
		300~999인	(8)	20.5
		1,000인 이상	(13)	33.3
	데이터 직무 관련 종업원 수	10인 미만	(9)	23.1
		10~50인	(10)	25.6
		51~299인	(16)	41.0
300인 이상		(4)	10.3	
학계	(14)	27.5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용 경험	현재 활용 중	(15)	29.4	
	과거 활용 경험 있음	(13)	25.5	
	향후 계획 있음	(23)	45.1	

2. 데이터 활용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서비스 또는 연구에 관한 주요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공공 부문에서는 데이터 구축·중개, 데이터 사업지원 등 데이터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고, 학계는 해당 분야 연구를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산업계는 개인화 추천 서비스, 데이터 구축·중개(데이터 사업) 사업 운영, 마케팅 기획 등에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용 사례는 <표 3-5>와 같다.

공공 부문은 주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공공데이터로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활용하기 위해서 방송통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융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를 융합한 서비스 개발, 여러 데이터를 수집·정리하여 대시보드나 리포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등이 있었다.

학계에서는 방송통신 산업, 사회문화, 이용자, 정책 등의 연구를 위해서 방송통신 데이터를 활용하는 한편, 최근에는 치안, 코로나, 인공지능 등과 같이 타 분야와의 융합연구를 위해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주파수 가치 산정, 연구개발비 원가행태, OTT와 방송서비스 대체 관계, 온라인 사회갈등, 방송정책, 법제 개선 방안, 스마트치안, 코로나 방역대책 효과 분석, 인공지능 파급효과 분석 등의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계에서는 실제 방송통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비스는 추천서비스, 데이터 구축·중개·분석 서비스, 마케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화 맞춤형 VOD 서비스, 구독서비스 추천 및 해지 서비스, 통신요금 추천 서비스,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였거나 활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데이터 중개 관련해서는 금융 데이터와 같이 소비자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송통신 데이터와 금융데이터를 결합한 소비 데이터 중심으로 판매 및 서비스 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기반 서비스·연구

응답자	분류		서비스/연구 사례
공공	데이터 구축/ 중개/ 분석 서비스	제공 (금융)	• 금융데이터 제공 및 타 분야와의 융합 데이터 제공
		제공 (방송/통신)	• 방송 통신 시설물 정보, 방송 관련 인력정보 제공
		제공/중개 (일반)	• 여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대시보드나 리포트 형태의 서비스
	사업지원/ 평가	방송/통신	• 인터넷방송 수익분배 클라우드펀딩 서비스 검토 • 방송통신분야 혁신 금융서비스 신청, 테스트베드 참여 검토
		데이터	• 데이터 관련 사업 지원 •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준비
	서비스 개선/혁신	융합 (관광)	•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 방안
학계	방송/ 통신분야 연구	산업/ 사업자	• 주파수 가치 산정 • 방송통신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비 원가행태 연구 • OTT와 방송서비스 간 대체 관계 연구 • 전국개별종합유선방송(SO) 발전방안 연구
		사회/문화	• 방송 언어 기반의 연령 차별주의 연구 • 온라인 사회갈등 연구
		수용자	• 수용자, 시장 조사 연구 •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 기반 연구
		정책/규제	• 방송정책 관련 연구 • OTT 법제 개선 방안 연구
	융합 연구	• 스마트치안 연구 • 한국인의 경쟁력 연구 • 코로나 방역대책의 효과 분석 • 인공지능 활용의 산업 파급효과 분석 • 자본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성 개선 연구 • 온톨로지 구축 연구 • 인공지능을 통한 검색 성능 개선 연구	

응답자	분류		서비스/연구 사례
산업계	개인 추천 서비스	방송/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콘텐츠 메타데이터 활용한 개인화 맞춤형 VOD 서비스 • 개인별 방송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이용률 낮은 구독서비스 해지권유 서비스 등 • IPTV, OTT 구독현황 활용한 적합한 구독서비스 추천 • 개인별 무선통신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활용한 적합한 통신요금제 추천 서비스
		융합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 유전체 분석 서비스 및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개인대상 본인 인증을 통한 결과 확인 서비스 • 개인건강기록 관리(PHR) 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사업화 •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융합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 납부내역 등 통신정보를 활용한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 • 개인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증권 및 금융 서비스 제공
		융합 (물류/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커머스 플랫폼 고객의 구매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데이터 구축/중개/분석 서비스	구축/중개 (방송/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스 대본 및 앵커 음성 데이터 가공, 검수 • 가구 단위 IPTV, VOD 시청 데이터 사업화 추진 중
		중개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라이선스 취득(마이데이터 사업자) • 통신의 이동인구 데이터와 카드의 소비 데이터를 융합한 통계 데이터 판매 및 서비스 • 개인 데이터를 결합, 가명·익명 처리 등 다양한 데이터 결합서비스
		중개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의료 데이터 통합, 관리 •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시 의료 데이터를 전송,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 기획 중
	서비스 개선/혁신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이용행태를 활용한 소비자 행태 분석 • 선호 채널, 선호 방송, 주요 이용 시간, 이용 패턴 등 고객 특성을 반영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 • 그룹사 공동광고 서비스

3. 주 사용 데이터별 활용 현황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응답자들은 주로 통신사, 플랫폼 기업, 금융사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를 통해서는 유동인구, 통신납부내역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는 콘텐츠 정보, 조회 수, 위치, 거주지역, 고객 행태, 광고 수익 및 접속량, 트위터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응답하였다. 금융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서는 금융 계좌, 보유 상품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들은 위치정보(유동인구, 모빌리티, 거주지역 등), 미디어 이용 정보(조회, 검색, 콘텐츠, 이용시간, 광고, 접속), 결제·금융 정보(카드 결제·이용내역, 통신비 납부, 금융상품 정보)의 활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주 업권 외에 타 업권 데이터와의 이종 결합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향도 보였다.

데이터 수집 방식은 API, 스크래핑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으며, 직접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 이용자의 스마트기기 입력 등의 방식도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주사용 데이터 출처, 종류, 서비스·연구 사례, 수집방식

데이터 출처(제공자)		데이터 종류	서비스/연구 사례	수집방식
통신사		유동인구	유동인구 및 소비 데이터를 이용한 관광상품, 사회인프라 구축 방안 컨설팅	API, 스크래핑
		통신납부내역	통신사 납부내역을 통한 신용 가점 서비스	
플랫폼사	OTT	콘텐츠 정보	고객 콘텐츠 목록 정보 활용 추천 서비스	API, 스크래핑, 스마트폰 위치전송 시스템 등
	구글, 네이버, 카카오	조회수	맞춤 건강정보 제공	
		검색어	사이버 문화	
		위치정보(이용자 모빌리티 정보)	코로나 대응 정책의 효과 분석(정책 이후 이동성 변화)	
		행태정보	고객 관심사에 맞는 금융 서비스 제안	
	거주지역 정보	고객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데이터 출처(제공자)		데이터 종류	서비스/연구 사례	수집방식
	유튜브	광고 수익 및 접속량	광고 수익분배	
	트위터	트위터 텍스트	사회적 약자 관점의 트위터 계정 해킹 경험 분석	
금융사		금융 마이데이터	자산 조회 서비스	API
			지출 관리 서비스	
			맞춤 혜택 제공 서비스	
		구독 관리 서비스 등		
카드 소비 데이터	유동인구 및 소비데이터를 이용한 관광상품, 사회 인프라 구축 방안 권선탱			
유통		검색정보, 구매 정보, 위치정보	검색, 구매 내역 정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 서비스	직접 기입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 계좌, 보유 상품(카드, 보험 등), 거래내역	통합 자산 조회(금융/소비/보험 상품 정보 조회 및 관리), 신용점수 조회 및 올리기	API
공공기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건축물(방송시설물) 정보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및 탄소 배출량 평가	공공데이터 또는 승인데이터
	KISDI	미디어 하루 이용시간	OTT와 방송서비스 대체관계	다이어리 설문
		유료방송가입자수	통계분석	회사 제공
	KOBACO	광고	수용자 분석	DB/ API
	국민연금공단, KCB, 금융감독원, 국토부, KED, 수출입은행,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연금, 은행, 신용, 증권, 기업 등	금융 데이터 단독 활용, 금융 데이터와 다른 분야 데이터의 결합 또는 융합한 서비스	API, 기관제공, 구매 (연계기관) 등
	지자체, 연구원 (ex. 문화관광연구원)	이동인구 통계 소비통계	지자체 행정업무 개선 및 인사이트 도출	각사에서 수요처에 메일 /usb방식

4. 방송통신위원회 데이터 개방 수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확보하고 싶은 방송 분야 공공데이터는 광고·매체별 시청 기록과 이용자 특성 데이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신 분야 공공데이터로는 위치정보, 요금제 정보, 가입자 현황, 통신 서비스 이용 정보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의 상품별 가입자 현황, 통신사 요금제 정보는 소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이긴 하지만 통신사가 보유한 민간 데이터이며, 스마트폰 이용자 로그기록, 유동인구 등은 닐슨, 통신사 등에서 유료로 판매되는 민간 데이터이다. 이들은 이용자 수요조사에서 응답자들이 민간에 의해서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개방을 요청한 데이터들이다. 실제 데이터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는 데이터 중 상당수는 이미 공공데이터로서 개방되어 있거나 민간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데이터들로 확인되었다. 한편 위치정보, 유동인구 등과 같은 통신 데이터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 등을 이용하면서 생성한 데이터로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공공데이터와 같이 개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에 개방을 요청하는 데이터로 분류하였다.

응답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확보를 희망하는 데이터의 수집 방식으로 API 형식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방송통신위원회 요청 데이터

	데이터 종류	방송통신 위원회 연관성	개방 가능 여부	비고 (개방 기관 등)
OTT	OTT 관련 데이터 전반 (OTT시장 및 사업자 현황, 이용자, 이용 트랙픽, 이용시간, 매출액, 비용구조, 망 이용료 등)	○	개방 검토	
방송	시청 기록, 선호채널 조사	○	판매 중	닐슨코리아, 한국갤럽 등 시장조사기관 (월단위)
	시청 점유율 현황	○	개방 중	Mediastat:시청점 유율 기초조사
	방송 매체별 점유율	○	개방 중	Mediastat:시청점 유율 기초조사

	데이터 종류	방송통신 위원회 연관성	개방 가능 여부	비고 (개방 기관 등)
	실시간, 콘텐츠별 시청률 현황	○		
	TV, 케이블방송 및 OTT 서비스별 시청내역 (시간, 콘텐츠명 등)	○		
	광고, 브랜드사별 광고 시청률, 점유율 등	○	개방 검토	
	광고 실태 조사 원시데이터(raw data) (ex. 방송광고운영실태조사, ~2014, ex.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kobaco)	○	개방 검토	
광고	광고별 영상 재생시간 현황	○	개방 검토	
	방송광고매출액	○	개방 중	
	방송 프로그램 전후 광고 상품 통계 - 광고 삽입 위치(1부와 2부 사이) - 광고 상세 내역(ex. 화장품2건, 아웃도어1건)	○	개방 검토	
기기 사용	스마트폰 이용자 성향분석(로그기록 활용)		판매 중	닐슨 코리안클릭(솔루션) (www.koreanclick.com)
	스마트폰, PC 시청기록 조사 (사용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연령, 성별, 지역, 교육 수준 등)와 결합된 스마트폰 PC 시청기록 데이터)	○	개방 중	Mediastat (스마트폰, PC 시청기록조사)
통신	통신데이터(유동인구)	○	판매 중	통신사, 플랫폼 (ex. 구글: 지역사회 이동성 보고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 위치정보	○		통신사
	통신사별 가입자 현황		개방 중	공공데이터포털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통신사 상품별 가입자 현황			통신사
	통신사 요금제 정보			통신사

	데이터 종류	방송통신 위원회 연관성	개방 가능 여부	비고 (개방 기관 등)
일반	정책연구정보	○	개방 중	공공데이터포털 (방송통신 정책연구 정보)
	경쟁상황평가보고서	○	개방 중	공공데이터포털 (방송통신 정책연구 정보)
	방송사업자 회계 자료	○	개방 중	공공데이터포털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
	KBS 각 프로그램별 수신료 사용 현황	○	개방 검토	
	KBS 각 프로그램별 광고수입 현황	○	개방 검토	
	드라마 등 K콘텐츠 해외 수출현황		개방 중	e나라지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 Mediastat: 방송통계포털

5. 민간기업 데이터 수요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이용을 희망하는 방송 분야 데이터는 광고 수입 현황, 시청시간 등이 있었고, 통신 분야에서는 결합할인, 통신사 상품 납부내역, 이용 고객 특성 등의 데이터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에 요구하는 데이터는 주로 고객의 특성을 식별할 수 있어 고객 타겟팅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에 관한 수요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구독자 정보 및 이용행태 정보, 방송정보 상세, 디바이스 보유 정보 및 이용행태 정보, 고객 요금정보 등과 같은 데이터이다.

한편 전송방식에 있어서는 공공데이터와 마찬가지로 API 형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데이터 형태로는 원시데이터(raw data) 형태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또는 보고서 형태의 정보는 구체적 분석에 한계가 있고 고객 프로파일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시데이터(raw data) 형태가 선호되었다.

〈표 3-8〉 민간기업 데이터 수요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방식
OTT	OTT 가입자, 구독자의 정보 및 재생정보	기간별 데이터세트(data set)
	IPTV 관련 데이터	재현데이터 또는 전처리 데이터
	OTT플랫폼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시청 데이터	API
방송	지역별 관광 콘텐츠 및 시청자 관심현황	API
	방송 프로그램 시청 통계	API 또는 원시데이터(raw data)
	방송시청시간	통계
	시청율 정보	API
광고	광고, 마케팅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광고 시청률, 점유율	원시데이터(raw data) 혹은 상품 협업
	프로그램 장르별 광고 수입 현황	엑셀 파일
	채널, 연령, 성별, 이용 패턴, 콘텐츠 분류, 광고 종류, 광고 도달률	API
기기 사용	사용자 로그데이터	json
	휴대폰 사용 패턴(시간 등) 데이터 사회인구학적 특성(연령, 성별 등)과 결합된 휴대폰 사용 패턴 데이터	Excel File
	모바일, PC 시청 정보 및 위치정보, VOD 서비스 계약자 정보	API
통신	결합할인 현황	
	통신사 상품정보	스크래핑, API
	고객별 통신요금제, 세부이용내역, 연체여부 등	API
	(통신 마이데이터 형태) 음성통화량, 문자(SMS,LMS,MMS) 사용량, 데이터 사용량과 가입중인 요금제 정보	API(OAuth 2.0 인증 방식)
일반	플랫폼(배민, 요기요 등)사의 콜 정보	API
	네이버, 쿠팡 등 라이브커머스 시간대, 품목, 매출 규모	

6. 데이터 수집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이용자 조사에서는 향후 서비스 제공이나 고도화를 위해 활용을 희망하는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 의견을 질문하였다.

많은 응답자들은 원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기 어려우며, 데이터들이 산재되어 있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신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방송통신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도 확인되었다.

〈표 3-9〉 희망 데이터수집 문제점 및 개선 의견

데이터 종류	문제점	개선 의견
OTT 관련 데이터 전반	실시간 정확한 통계치 수집 어려움	• 주기적 정보공개
광고, 브랜드사별 광고 시청률, 점유율 등	관련 데이터들이 산재되어 있음	• 여러 데이터를 한 곳에서 검색,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광고 실행 조사 원시데이터(raw data)	데이터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음	•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필요
시청기록	제한된 정보만 제공	• 가능한 범위에서 많은 정보 제공
실시간, 콘텐츠별 시청률 현황	현재 e나라지표에서 연도·채널별 지표만 공개	• 데이터 수집 단위 세분화 필요 (시간별, 콘텐츠별) • 채널보다는 콘텐츠별 통계 수집 필요
방송 매체별 점유율 추이	방송사 내부정보에 해당되어 상세 내역의 공개를 꺼림	• 필요한 경우 가명처리를 통해 원시데이터(raw data) 손상 없는 제공 필요
해외 방송 시장 조사 OTT 서비스 관련	하나의 데이터세트(data set)를 여러 개로 분절하여 개방 중	• 대상별로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여 활용도 제고 필요

7.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

방송통신분야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의견은 민간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개방 범위 확대, 활용성이 높은 데이터 개발, 데이터 표준화, 원시데이터(raw data) 개방 확대, 타 분야 데이터와의 결합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실제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들

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세 추가 의견은 <표 3-10>과 같다.

<표 3-10>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

구분	개선 주제	의견
데이터 개방	활용 가능 데이터 개발 및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이 생활에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활용가능한 데이터는 한정적이므로 적극적으로 가치 있는 데이터 개발이 필요 • 방송 분야는 국내 경쟁이 활발한 만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음
	정부 주도 데이터 공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민간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데이터 개방 유도 • 정부가 연구과제 형태로 지원하여 활용도 높은 민간 데이터 개방 지원
	수요 기반 데이터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세트(Data set)를 만드는 것이 중요
	상세·시계열 데이터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대, 성별 등 정보주체의 특성을 최대한 세분화하여, 인기 장르, 주요 시청 시간대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의 활용도 높음
데이터 유통/활용	테스트베드를 통한 데이터 활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변하는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테스트베드를 활용하여 데이터 활용에 우선 무게를 두면서 규제 방향과 범위를 수립할 필요
	데이터 표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데이터들도 표준화 등 데이터 정비 필요 • 타업권과의 결합을 통해 공유데이터 확대 필요 • 시계열적 축적과 비교통계를 위해 방송시장 데이터 및 시청데이터의 범주 표준화 필요
	콘텐츠 데이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분야 데이터 이외의 다양한 데이터 개방 필요 • 콘텐츠에 메타데이터 등을 연결하여 콘텐츠를 데이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분석 기능 병행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시데이터(raw data) 다운로드 및 플랫폼 상에서 분석 기능을 병행해서 제공
	홍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가능한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현황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접근가능한 사이트나 방법에 관한 적극적 홍보 필요
	비즈니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통신사, 플랫폼,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개발기업 간의 협력 기회 확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를 보유한 통신 분야와 타 업권 간 융복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위해 개방 분위기 마련 및 정책적 지원 필요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비자 행태조사 재개 필요 • 방송시장 변화에 따라 1인 미디어와 OTT 서비스를 포함하는 행태조사 필요 	

제3절 그룹인터뷰 결과

1. 주요 서비스 및 업무

FGI에 참여한 기업들이 방송통신분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서비스 및 업무는 크게 금융 마이데이터,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 IT 서비스로 구분된다.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 제도를 기반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업권의 개인 데이터와 결합하여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림 빅데이터 플랫폼은 산림 관련 데이터를 축적, 가공,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최근에는 금융, 통신, 교통 등 다양한 데이터와의 결합을 통해 지역소멸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에도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IT 서비스는 계열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 프로파일링, 세그먼트 등 마케팅에 활용하고 유동인구, 생활인구, 거주인구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신사와 신용카드사에서 소비와 관련한 데이터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2. 공공데이터 활용 현황 및 수요

1) 전체 공공데이터

학계는 산업계에 비해 공공데이터 활용이 많은 편이나, 민간데이터와 비교하여서는 공공데이터보다는 민간데이터 활용이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산업계에서는 공공데이터 활용이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업계에서는 고객 프로파일링, 캠페인 등을 위해 고객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선호하기 때문에 공공데이터 활용이 많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공공데이터 중에서는 신용평가를 위해 국세청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는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공공데이터와 고객데이터와의 결합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창출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품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

전반적으로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에 관한 인지가 높지 않으며 실제 활용 사례도 많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에서는 방송사 재산상황 공표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공공·민간 영역 비교분석 연구를 수행한 경험은 있으나 대체로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 활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BS1과 KBS2 간 비용 배분, 인건비 및 제작비 투입 상황 등 수신료 활용 관련 세부 데이터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되기도 하였다.

업계에서도 방송통신분야의 공공데이터 활용이 많지는 않으나 시청률, 뉴스 데이터 등을 활용한 경험들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BIG KINDS의 뉴스 데이터, 코바코의 매체 활용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방송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개발하여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방송 미디어 콘텐츠에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공공영역에서 생성하고 공유하면 민간에서 방송 미디어 콘텐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 필요한 데이터로는 시청점유율 상세 데이터(일별·시간대별, 콘텐츠별 시청점유율), 공공데이터 포털 내 프로그램 시청정보, PC·스마트폰을 통한 시청 데이터, 와이파이 칩·위치사업자 정보, 라코이 데이터(RACOI; Response Analysis on Content of the Internet, 방송콘텐츠 인터넷반응 조사) 중정성 데이터 등이 언급되었다.

한편 방송시장에서 OTT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서 공공데이터로서 OTT 이용 관련 데이터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모든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3. 민간데이터 활용 현황 및 수요

공공 부문에서는 통신사의 지역별 통신 감도(Sensitivity)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림 내 재해 통신망을 구축하거나 공공 정책 수립에 통신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산업계에서는 헬스케어와 금융 분야에 비해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수요는 많지 않았고, 방송보다는 통신 분야의 민간 데이터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닐슨의 방송 시청률 조사 데이터를 구매해서 활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향후 필요한 데이터로는 통신사의 소액결제 상세내역(사업자번호, 납부수단 등), 포인트 정보, 지역 유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는

고객 단위의 통신데이터, 스마트폰 앱 설치 및 활용 데이터, 실내 위치정보 등이 언급되었다. 통신사 결제 및 포인트 정보는 현재 금융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수집이 가능하나 상세 데이터가 필요하며, 고객 단위 통신 데이터는 소비 패턴, 고객 특성 데이터를 결합하여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앱 정보와 위치정보 등은 고객 이해, 근접거리 프로모션, 지역맞춤형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다.

4. 기타 건의사항

공공데이터 대부분이 민간에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공공데이터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종류를 재검토하여 활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데이터 대부분이 데이터보다는 분석결과, 보고서 형태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원시데이터(raw data) 수준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다.

한편 시청률 데이터 관련해서 최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시청이 되므로 미디어 사용 행태 변화가 반영된 시청률 측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제 4 절 데이터 개방 검토 의견 및 소결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FGI를 통해서 개방을 희망하는 데이터와 의견 중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연관성이 높은 것들을 <표 3-11>과 같이 정리하여 방송통신위원회부터 검토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3-11〉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수요(설문조사, FGI)

	데이터 종류	개방 여부	비고*
OTT	OTT 관련 데이터 전반 (OTT시장 및 사업자 현황, 이용자, 이용 트래픽, 이용시간, 매출액, 비용구조, 망 이용료 등)	-	
방송	시청 점유율 상세 데이터(일별/시간대별, 콘텐츠별 시청점유율 등)	개방중	Mediastat:시청점유율기초조사
	방송콘텐츠 인터넷반응 조사(RACOI: Response Analysis on Content of the Internet.) 정성적 데이터	개방중	현재 정량분석 데이터만 공개
	방송미디어 콘텐츠를 학습용 데이터로 전환하여 개방	-	
	표준화된 방송 미디어 콘텐츠 메타데이터 공공 영역에서 생성하고 공유	-	
광고	광고, 브랜드사별 광고 시청률, 점유율 등	-	
	광고 실태 조사 원시데이터(raw data) (ex. 방송광고운영실태조사, ~2014, ex.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kobaco)	-	
	광고별 영상 재생시간 현황	-	
	방송 프로그램 전후 광고 상품 통계 - 광고 삽입 위치(1부와 2부 사이) - 광고 상세 내역(ex. 화장품2건, 아웃도어1건)	-	
기기 사용	스마트폰, PC 시청기록 조사 (사용자의 사회인구학적 정보(연령, 성별, 지역, 교육 수준 등)와 결합된 스마트폰 PC 시청기록 데이터)	개방 중	Mediastat (스마트폰, PC 시청기록조사)
일반	KBS 각 프로그램별 수신료 사용 현황	-	
	KBS 각 프로그램별 광고수입 현황	-	

주: mediastat: 방송통계포털

많은 이용자가 통신 데이터 개방을 요청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방을 검토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방송시장 변화에 따라 OTT 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개방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다.

시청 점유율 현황에 관한 원시데이터(raw data)는 패널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월 TB 수준 로그데이터이므로 공개의 어려움이 있으며,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중간 결과물이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최종결과물과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 한편 고정형TV를 통한 방송프로그램별·성별·연령별·장르별·일자별 시청시간 등은 매일 공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개방은 불필요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방송 분야에서 시청기록과 선호채널 조사 결과, 디바이스별 시청기록 등은 시장조사기관들이 판매 중이거나 방송통계포털(Mediastat.or.kr)을 통해서 개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광고 관련 실태조사 데이터, 광고별 영상 재생시간, 광고 매출액 등의 데이터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소관 데이터이고 데이터 개방은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 한편 상기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데이터 중 새롭게 요구되는 데이터는 개방 필요성이 높을 경우 최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방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수요 및 의견을 종합하면 실제 이용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데이터 개방 및 이용 수요가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데이터는 다른 업권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방송통신분야에서 요청되는 데이터 중 대부분은 통신데이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거나 민간기업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송통신분야의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은 다양한 데이터를 업권 구분 없이 활용하고자 하므로 수요가 높은 데이터 중 소관부처의 경계가 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어 데이터 활성화를 목적으로 데이터 개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부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 OTT 성장에 따라서 관련 데이터의 수요가 많은 만큼 OTT 관련 데이터 관리 및 개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이용자들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현재 개방하고 있는 실태조사, 통계조사 등의 원시데이터(raw data)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공공기관, 방송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콘텐츠에 메타데이터 등을 추가하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등 기보유 중인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 제약조건

본 연구에서는 2장의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분석’과 3장의 ‘데이터 개방 수요 조사’를 통해 방송통신분야 데이터의 개방·활용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과, 잠재 데이터 이용자들이 구축·개방을 원하는 데이터의 종류, 혁신주체들이 보다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식별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주요 이슈 중 네 가지를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의 개방·활용 활성화의 제약조건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법·제도적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주요 제약조건으로는 ①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② 방송통신분야 조사데이터 개방, ③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로의 활용, ④ OTT 개방 등을 선정하였다.

제 1 절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1.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공데이터 구축·개방 현황을 선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의 양적 개방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기준으로 파일데이터 34건, 오픈 API 4건(2022.11.30. 기준)으로 데이터 개방 건수는 타 부처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데이터 개방형식 또한 정책보고서 및 통계성 데이터 위주의 개방을 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성이 높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활용성이 높은 형식으로 방송통신분야의 새로운 데이터 발굴을 통해 개방과 활용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적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수반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개방과 활용 대상이 되는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현황을 살펴 보아야 한다. 민간부문에서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활용성이 낮은 저

품질의 데이터 대량 개방보다는 활용성이 높은 고품질의 데이터를 구축, 개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용어집, 도메인집 등을 통해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단편적인 데이터 표준화로 위원회가 보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데이터 전반의 품질을 향상하기 어렵다. 특히, 과거의 공공데이터 개방은 양적 측면의 개방을 중요시하였으나 양적 개방과 함께 품질 향상이 중요해지는 최근 데이터 정책 흐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공데이터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는 현업 부서에서도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내부 업무 관리체계가 체계적으로 추진, 관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업무 관리체계의 구체성 및 완결성은 개방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로 연결되게 된다. 한편, 체계적인 업무 추진체계의 기본은 바로 위원회 내부에 구속력을 갖는 법제도를 갖추는 것에 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는 품질관리를 포함한 공공데이터 사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기본 규칙, 직무에 따른 권한, 업무 분장 등을 규정한 별도 지침이 부재한 상황이다.

공공데이터의 양적 개방 및 활용에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품질관리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 이와 관련된 별도의 지침 또는 규정 등의 법제도 장치의 부재는 결국 업무 추진 시 추진 근거 부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이행의 어려움으로 직결되게 된다. 이는 결국 방송통신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활성화 저해까지 연결될 수 있다.

2.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고려사항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양적 증가와 품질 제고,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위해서 상위법 간 관계를 준수하여 적절한 형식으로 공공데이터 관련 제공 및 이용, 품질관리를 포함한 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보유 및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지침 및 규정을 통해 활용성이 높은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원하는 주체에 공급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및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내부 지침 및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타 중앙행정기관의 입법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타 중앙행정기관

의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내부지침과 별도로 품질관리 세칙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품질관리 역시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에 수반되는 관리적 사항으로써 별개의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지침 마련 시 유사한 분야 및 내용을 별도의 세칙 등으로 마련할 경우 법체계 및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

공공데이터 구축 및 개방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내부 지침 마련 시에 방송통신분야의 특성과 내부 업무체계 등의 상황 및 업무 수행에 있어 공공데이터 관리 원칙과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형식의 입법이 필요하다. 타 중앙행정기관의 입법례를 검토한 결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데이터 관리 규정', '공공데이터 제공 훈령' 등 다양한 제명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의 경우 행정안전부 고시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기본으로 하고 각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규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 성격에 맞는 제명을 고려하여 공공데이터 관련 지침 또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침 또는 규정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내부 현황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여 방송통신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표 4-1〉 타부처 공공데이터 관련 지침 및 규정

지침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법무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 관리 규정
국가보훈처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데이터 관리 규정
대검찰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기상청 데이터 관리 및 제공 규정
새만금개발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문화재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통계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산림청 데이터 관리 규정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국방 공공데이터 제공 훈령	

3.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

타 부처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지침 및 규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직 및 방송통신분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을 구성하였다. 조문체계는 총 6장과 시행을 위한 부칙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총칙에서 목적, 정의, 적용범위, 기본원칙을 정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조직 및 역할로서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등 지정과 역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와 주관부서, 업무담당자와 업무부서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최근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지표와 연계하여 공공데이터 협의회 운영 규정도 함께 구성하였다. 제3장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로써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한 제공기반 구축, 제공 신청의 접수, 제공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와 연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훈련 규정과 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마지막 제6장에서는 보칙으로서 준용 규정을 두었다.

〈표 4-2〉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

제1장 총 칙	제4장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제1조(목적)	제14조(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제2조(정의)	제15조(데이터 표준관리)
제3조(적용범위)	제16조(데이터 산출물관리)
제4조(기본원칙)	제17조(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제2장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조직 및 역할	제18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등 지정)	제19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의 역할)	제5장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
제7조(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및 주관부서의 역할)	제20조(공공데이터 교육·훈련)
제8조(업무담당자 및 업무부서의 역할)	제21조(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제9조(공공데이터 협의회 운영)	제6장 보 칙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제22조(준용)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제23조(재검토기한)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부 칙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제1조(시행일)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제2조(경과조치)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2.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4. “데이터베이스(DB)”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5.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6. “연계데이터”란 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나 파일 형태로 기관 내 또는 유관기관 간 송·수신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7. “오픈API”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모든 소프트웨어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
8.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9.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가치 제고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0. “데이터표준관리”란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및 코드의 규칙을 정의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데이터구조관리”란 데이터 모델 설계를 위한 원칙과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를 정의하여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2. “행정표준코드”란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표준화하여 제정·고시한 코드를 말한다.
13.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세트(data set)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4. “도메인”이란 데이터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영역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5. “공공데이터 포털”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같이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통합제공시스템이다.
16. “소속기관”이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의2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17. “산하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18. “주관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19.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20.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이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말한다.
21.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주관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22.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란 공공데이터를 직접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업무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공공데이터에 적용·시행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취득 또는 제공과 관련된 업무의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범위에 적용한다.

③ 산하 공공기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리 시행 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제공표준을 준수하고 중복데이터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정보시스템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조직 및 역할

제5조(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체계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2.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혁신기획담당관에 2인 이상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의 역할) 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방송통신위원회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 ②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으로서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으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및 주관부서의 역할) 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및 주관 부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서 협업
 - 가.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 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홈페이지 안내
 -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
 - 라.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검토·승인
 - 마. 공공데이터 제공 현황 작성 및 행정안전부 통보
 - 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직원교육·훈련
2. 공공데이터 제공
 - 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및 제공 내역 작성·관리

-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
- 3. 공공데이터 사후관리 및 폐기
 -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 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관리
 - 다. 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관리
 - 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관리
- 4.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점검
 -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 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 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 라.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대응
- 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관리
 - 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시책 수립
 - 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 다.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8조(업무담당자 및 업무부서의 역할) ① 업무담당자 및 업무부서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공공데이터 생성·수집 및 제공을 위한 처리
 - 가. 공공데이터 수집 및 취득
 - 나. 개인정보 등 법령에서 정하는 비공개정보의 포함 여부 확인
 - 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 여부 확인
 - 라.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생성·구축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로부터 계약시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양도 허락 확인·점검
 - 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 여부 확인

2. 공공데이터 등록 및 제공

- 가. 공공데이터 목록 작성 및 제출
- 나. 공공데이터 포털상 공공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관리
- 다.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처리
- 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지원
- 마. 공공데이터 갱신을 위한 자료의 요청기한 내 제출
- 바. 보유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3. 공공데이터 사후관리 및 폐기

-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처리
- 나.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 다. 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 라. 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관리

- ② 업무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적용·시행 사항을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한다.
- ③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로부터 소관하는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변경, 제공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 협의회 운영) 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련 사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업무담당자,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담당자,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공데이터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 평가에 관한 사항
- 3. 공공데이터 신규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공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
 5. 공공데이터 품질 및 표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데이터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업무 부서,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③ 공공데이터 협의회 의장은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으로 한다.
 - ④ 의장은 협의회 의건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부서의 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한다.
 - ⑤ 의장은 협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협의를 대신 할 수 있다.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①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신청·접수는 공공데이터 포털로 일원화한다.
- ② 공공데이터 신청 내역은 공공데이터 포털의 신청목록으로 관리한다.

-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제 12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 통지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제14조(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조직 및 인력
2. 데이터 품질관리 목표의 정의
3. 중점 데이터 품질관리 대상 선정
4.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계획
5. 데이터 표준화 적용 계획
6. 데이터 품질오류 처리 방안
7. 연계 데이터 품질확보 방안
8. 메타데이터 현행화 방안
9. 데이터 관련 산출물 관리 방안
10. 그 밖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에 포함된 추진 과정의 이행 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데이터 표준관리) ① 공공데이터 표준관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공데이터 전

반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표준 적용이 불가능한 패키지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표준관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표준단어
 2. 표준용어
 3. 표준도메인
 4. 표준코드
 5. 그 밖에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데이터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표준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2. 데이터 표준관리 프로세스
 3. 데이터 표준관리 요소별 명명규칙
 4. 그 밖의 데이터 표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데이터 산출물관리)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는 정보화 시스템을 설계·구축·운영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화 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산출물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7조(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 수준 확보를 위해 업무부서와 협조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 대상을 선정하여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 값 오류
 2. 데이터 구조 일관성 관리
 3. 데이터 표준 준수

4.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관리
5.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성능 관리
6. 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7. 그 밖의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 ②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업무부서에 제1항에 따른 품질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부서는 개선요구 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계획의 이행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18조(연계데이터 정합성 관리) 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업무부서와 협조하여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업무부서는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연계데이터의 공동 활용에 따른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계데이터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계데이터 정의
2.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정의
3. 연계데이터 세부항목 출처
4. 연계데이터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5. 그 밖의 연계데이터 목록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관리) ①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업무부서와 협조하여 품질 오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 및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오류 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 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3. 공공데이터 포털에 이용자가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 오류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 ②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오류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품질오류 신고일
 2. 품질오류 신고내용
 3. 품질오류 여부
 4. 품질오류 처리결과 및 통지일

제5장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등

제20조(공공데이터 교육·훈련)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과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품질관리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21조(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민간 중복·유사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준용)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5.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3조(점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0월 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00월 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제공된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 2 절 방 송 통 신 분 야 조 사 데 이 터 개 방

1.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등 각종 조사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별법에 당해 조사의 법적 근거를 갖춘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중소기업실태조사, 중견기업법 제24조에 따른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발명진흥법 제20조의6에 따른 산업재산권 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제22조의2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은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통계법상 승인통계에 해당하거나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정통계는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중 통계법상 승인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여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 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통계법 제18조). 이 경우 통계법상 규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 외에는 특별히 실정법상의 근거를 두지 않고, 정부로부터 통계조사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업무 계약 등을 통하여 수행되는 조사가 있다. 다만 법률상 근거 없이 수행되는 조사에서 그 수행 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해당하는 원본데이터(이하 “조사데이터”라 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상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하거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상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된 조사의 경우 조사데이터의 공개·개방·활용에 대하여도 각 법률의 관련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그러나 개별법 또는 통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개별법상 조사데이터의 공개·개방 제한 규정

개별법에 조사 수행의 근거를 두는 대부분은 해당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또는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와 당해 조사를 통해 수집된 조사데이터를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거나 그러한 정보가 집적·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즉, 전반적으로 개별법에서는 해당 조사데이터의 특성과 중요성,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공개 및 자료제공의 범주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⁴⁾

가령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에서는 교육통계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조사데이터를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요청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입법례로 의료기기법 제45조는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의 보호를 문서로 요청하면 그 제출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상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다만 여기에서 정보공개 및 제공요청의 주체는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이 되기도 하며, 일반 국민이 제공요청의 주체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데이터의 공개·개방에 관한 규정은 대체로 개인정보가 포함되거나 다른 법인·법인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공개·개방한 조사데이터의 활용 범주 역시 제삼자 제공이나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개별법에서 공개·개방에 관한 근거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법으로서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에 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

3. 통계법상 승인통계 또는 지정통계의 공개·개방 제한 규정

통계법상 승인통계 혹은 지정통계의 경우 기구축된 조사데이터(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31조 제1항). 이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자료의 사용목적·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31조 제2항). 이때 대부분의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1조 제2항). 여기서 타당성 심사의 경우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의 의도를 통제하기 위함이고, 영업상 비밀 침해의 경우 정보주체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라 할 수 있다.

제공된 통계자료는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법 제30조 제3항). 또한 그 밖에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역시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계법 제33조).

4. 법률상 근거 없는 조사의 공개·개방 제한 규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법에서 조사데이터의 공개·개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수행되는 조사의 경우 정보공개법과 공공데이터법이 적용된다. 우선 정보공개법상의 정보는 “공공기관⁵⁾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5)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을 뜻하므로 조사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공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9조 제1항). 이에 의하면, 비공개 정보에 속할지라도 반드시 비공개 처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따라 취급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사데이터의 원본은 개인정보에 속하거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는 비공개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조사데이터가 이미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하고(법 제15조 제1항),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의 요청이 있으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2항).

다음으로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포함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있다.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조사데이터는 공공기관⁶⁾이 생산한 정보로서 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공공데이터법에서도 제공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삼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두 가지를 예시로 들고 있다(법 제17조 제1항). 이에 의하면, 앞서 살펴본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개인정보에 속하거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데이터(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1항). 이때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조사데이터가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법 제27조 제3항).

5. 조사데이터의 공개 및 제공을 위한 법적 방안

결론적으로 조사데이터는 조사 수행을 통해 수집된 원본데이터로서 개인정보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공개와 개방이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속하거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식별 처리된 조사데이터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한편, 일부 입법례에서는 조사데이터의 요청 주체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인 경우 일

6) 이 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1호).

부 비식별 처리 없이 식별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계법은 다른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 혹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후 그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식별되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0조 제2항).

따라서 통계법 외에 조사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둔 법률에 이와 같이 식별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조사데이터의 원본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애초에 조사를 수행하는 당시에 조사데이터의 공개·개방·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통계조사의 작성 주체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 보호의 의무가 있는 데다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사일지라도 대부분은 해당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설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사에서 비밀 의무 약정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목적 외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취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제 3 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활용

1. 자동화된 데이터 학습행위의 저작권 침해 여부

공개되어 있는 방송 콘텐츠나 뉴스클립 등을 자동화된 기계장치를 이용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전송권·공중송신권·방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인간이 아닌 크롤링 로봇 등 자동화된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더라도 이를 침해자가 도구로서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이터 학습행위가 최종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에서는 예외적 사유로서 여러 저작권 제한 사유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데이터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의 저작물

활용이 면책받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 사유는 일반조항으로서 규정된 공정이용 조항(제35조의5)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제28조)이 있다.

<p>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p> <p>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먼저 공표된 저작물 인용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민간기업에서의 데이터 분석에 적용이 어려움이 있다. 그나마 적용 가능성이 유력한 규정인 공정이용 조항은 미국에서 FTA를 통해 요구해 국내에 도입된 조항인데, 미국은 신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사용을 하는 경우 변형적 이용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아, 해당 저작물을 직접 판매 또는 가공을 통해 재판매하는 등의 영리적 창출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대체로 공정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책을 구글이 스캔을 해서 구글 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안에서도 미국의 판례는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여 공정이용이라고 보았을 정도이다. 즉, 미국에서는 원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목적 변형’의 경우 신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공정이용을 긍정하고 있다. 반면 이용 목적은 동일하더라도 다른 내용을 변형하여 다른 표현이나 미적 의도를 가진 저작물로 변형시키는 ‘내용 변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그러한 경향성을 뚜렷하게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한계가 있다. 또한 공정이용에 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바, 기술 발전의 속도나 흐름 속에서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 될 여지가 크다. 공정이용 일반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법률적 위험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별도 저작권 제한 조항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행위에 대하여 면책을 부여하는 저작권법 전면개정안(도종환 의원 대표 발의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에서 여전히 해석상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 가령 법안은 원천데이터로의 접근과 관련하여 신설조문은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여기서 적법한 접근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제43조(정보분석을 위한 복제·전송) ①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기술을 통해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분석(규칙, 구조, 경향, 상관관계 등의 정보를 추출하는 것)하여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저작물에 적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만들어진 복제물은 정보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보관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은 우리와 달리 일반조항으로서 공정이용 조항이 없어 일찍이 자동화된 정보 분석 행위에 대한 면책을 인정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일본의 입법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기록매체에의 ‘기록’ 또는 ‘번안’의 한도 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공지능 개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당시 기록과 번안이라는 제한적인 행위만 허용되었는데, 2018년 개정법에서는 기존의 허용 범주를 크게 확대하여 정보 분석 목적으로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스스로 향수하거나 타인에게 향수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30조의4). 특히 일본의 개정법은 비영업적 목적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없이 사업자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해외 입법례와 비교하여 적극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법상 입법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이용허락 받은 저작물의 학습용도 사용에 관한 법률 쟁점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이에 따라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법 제46조 제2항). 따라서 방송콘텐츠 및 뉴스클립 등을 데이터 학습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에 해당하는 원저작자를 비롯하여 인접권자로서 실연자와 방송사업자 등으로부터 데이터 학습을 위한 용도로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방송콘텐츠 등의 저작물을 판매계약을 통해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 또는 양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저작물을 유·무상의 계약 체결을 통해 데이터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권이라는 권리 자체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양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데이터 학습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하여 권리 침해 없이 전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다만 다량의 저작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자가 각 콘텐츠의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접근하여 권리 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애초에 권리 처리가 된 상태의 저작물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유튜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물의 포괄적 이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사례에서 보듯이 학습용 데이터 세트(data set)를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포괄적 이용허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강구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제 4 절 OTT 데이터 개방

1. 방송통신위원회 OTT 관련 데이터 개방 현황

데이터 기반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공공데이터의 가치 및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정부는 지속적인 민간 수요조사를 통해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를 발굴하여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의 개방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데이터 수요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이 있는 데이터 중 OTT(Over-the-top) 서비스와 관련한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OTT 시장 및 사업자 현황, 이용자 현황, 이용 트래픽, 이용 시간, 매출액, 비용구조, 망 이용료 등 OTT 서비스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시청자들이 TV를 통한 시청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 넷플릭스나 왓챠(Watcha) 등의 OTT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청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나타나는 대체 관계나 소위 FANG(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으로 대변되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경쟁관계, CP(Contents Provider) 사업자의 영향력 증가에 따른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와 CP 사이의 망 이용료 징수 갈등 등 정책 연구를 위한 수요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업무를 소관⁷⁾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OTT와 관련한 공공데이터를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공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절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중 OTT를 비롯한 방송 관련 데이터의 공개 현황과 타 부처 제공 OTT 관련 공공데이터 현황에 대해 살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위원회의 소관사무) ①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1. 방송광고정책, 편성평가정책, 방송진흥기획, 방송정책기획, 지상파방송정책, 방송채널정책에 관한 사항
2. 조사기획총괄, 방송통신시장조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 시청자 권익증진,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펴보고, OTT 데이터 공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022년 11월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확인되는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는 서비스 API를 제외하고 총 34건이다. 이중 방송 및 OTT와 관련있는 데이터는 <표 4-3>에 나온 것과 같이 총 23건(방송 12건, 해외 OTT 11건)이다.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고,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중 OTT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되어 있다.

<표 4-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분야 공공데이터 현황(2022.11. 기준)

데이터명	등록 연도	보유근거	설명
방송사업자 허가 현황	2019	방송법 제9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명, 대표자 성명, 주소지, 연락처(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주소 등 주요 허가 사항 현황
장애인방송 편성 현황	2019	방송법 제69조, 시행령 제52조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지상파, 보도PP, 종편PP, SO)의 연도별 장애인방송 유형별(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통역방송) 목표 대비 실적 현황
고정형TV(실시간, VOD) 조사	2021	-	고정형TV(실시간, VOD)의 방송프로그램별 월 시청시간과 장르별 시청시간, 일자별 시청시간 등에 대한 조사 통계 정보
스마트폰, PC 시청기록조사	2021	-	스마트폰, PC의 방송프로그램별 월 시청시간, 장르별 월 시청시간에 대한 통계정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현황	2019	방송법 제98조의2	각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위성, IPTV, PP, CP, 지상파 DMB)가 제출한 재산상황 자료에 기초하여 제공
시청자평가지수(KI)정보	2019	방송법 제31조	지상파 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시청자평가지수와 채널 성과 등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품질을 평가하여 제공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현황	2019	방송법 제35조의5	방송시장을 유형별(OTT, 이용자, 광고주, 외주제작사, 유료방송서비스이용자)로 구분하고, 시장별로 사업자 수, 점유율 등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수록
방송평가정보	2019	방송법 제31조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의 1년간의 방송사업 실적을 방송평가 규칙 및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자 제출 자료를 평가한 자료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편성, 운영 영역별 평가 결과 제공

데이터명	등록연도	보유근거	설명
시청점유율 현황	2019	방송법 제69조의2, 시행령 제52조의3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시청 행태(채널별 시청점유율, 시청점유율 기초조사_가구대표, 시청점유율 기초조사_가구원)를 조사한 데이터를 제공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정보	2019	방송법 제83조	주요 의무 편성 규정별(전문편성 PP채널, 종편 및 애니메이션 전문 PP, 지상파3사, 지역민방TV)로 방송사업자의 편성현황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 데이터를 제공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자료	2019	행정업무	TV, 라디오 등 다양한 방송매체의 보유와 이용에 관한 가구, 개인 대상의 면접조사 결과 자료
방송산업 실태조사 현황	2019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1조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IPTV사업자, IPTV콘텐츠제공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추정하지 않고 집계·분석한 결과
해외방송시장 조사 - 해외OTT 서비스 관련 (11건)	2022		시청시간, 주이용 서비스, 방송/OTT 이용비율, 유료 OTT 비가입 이유, 유료 OTT 가입 행태, 선호하는 OTT 시청 유형, OTT 서비스 주 이용 장소, OTT 서비스 주 이용 시청기기, OTT 서비스 시청 비율, OTT 서비스 시청 행태, 즐겨보는 장르

주: 음영 표시된 항목은 OTT 관련 데이터를 포함
 자료: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데이터 검색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공데이터 중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방송통계포털(mediastat.or.kr)을 통해 제공된다. 방송통계포털에서는 원시데이터(raw data)를 총계처리를 거쳐 통계표 형태로 제공하는데,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와 시청점유율 조사에 대해서는 원시데이터(raw data)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고정형 VOD(비실시간) 및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는 시청점유율에 대해서도 별도의 게시판을 통하여 원시데이터(raw data)를 제공하는데, 이는 두 조사가 법령에 근거한 공식 조사가 아니라 일종의 보조자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⁸⁾

8) 시청점유율 조사는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을 위하여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현행 법령 하에서는 비실시간 시청이나 N스크린(스마트폰, PC 시

방송 관련 데이터 중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와 방송산업실태조사는 공식 통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Microdata Intergrated Service)를 통해서도 공개가 되어 있다. 그러나 MDIS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결과는 2017년까지만 등록이 되어 있으며,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로 관리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관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방송미디어의 이용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TV시청률만으로는 방송콘텐츠의 평가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과 타 매체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반응지표 체계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다.⁹⁾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RACOD)에서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반응을 시청자버즈와 미디어버즈로 분류하고, 시청자버즈는 포털 및 주요 게시판의 게시글 댓글, 동영상 조회로, 미디어버즈는 뉴스기사와 동영상에서 해당 콘텐츠가 언급된 수를 측정하여 공개한다. 또한 주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시청률과 고정형 VOD에서의 재생시간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OTT 서비스 중 넷플릭스에서 직접 제작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 한국드라마의 콘텐츠에 대하여 4주간의 인터넷 반응(시청자버즈, 미디어버즈)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있다.

2. OTT 관련 데이터 공개가능성 검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공데이터 관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들은 OTT 사업자 현황, 이용자 현황, 이용 트래픽, 이용 시간, 매출액, 비용구조, 망 이용료 등 OTT 서비스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OTT 서비스에 대해서도 그대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는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DMB 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청)이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통합시청점유율 산출에 참고하고자 2015년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9) <https://www.racoi.or.kr/kobaco/main.do>

시장규모, 시장구조, 매출구조, 매출액, 가입자수, 수익성, 시청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또한 일부 항목은 방송법 제98조의2¹⁰⁾에 따른 재산상황 공표 의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표하는 재무제표 내의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OTT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지정하여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공공데이터법의 정의에 따라 공공데이터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로 한정되는데, 이는 “행정기관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한다. 위의 <표 4-3>에서도 볼 수 있듯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개한 공공데이터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나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보유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방송사업자로부터 시청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범위로 삼고 있다. 또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서도 IPTV를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영상·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OTT 서비스는 QoS가 보장되는 회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형 인터넷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IPTV법의 범주에도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가 OTT사업자에게 실태조사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OTT 서비스에 대한 주무부처의 문제도 존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외의 부처는 이미 OTT 사업자에 적용되는 규제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일부개정)」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

10) 「방송법」 제98조의2(재산상황의 공표) ①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년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해당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재산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범주에 포함하였으며, 동법상의 부가통신사업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2021년부터 실시된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특히 해당 실내조사에서는 매출 등 규모가 큰 100여 개의 주요 부가통신사와 12개 핵심플랫폼 기업에 대하여 심층조사 데이터를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OTT 서비스를 「영상진흥기본법」 개정안에서 영상미디어콘텐츠로 분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통과되어 OTT 서비스가 방송의 일부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제공 구조와 수익·비용구조가 일반 방송과 완전히 다른 OTT 서비스에 대하여 현재의 방송법에서 방송사에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현재 (유료) 방송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비해서 매우 강한 소유규제와 영업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방송이 음성·영상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생기는 강력한 여론 형성기능과, 희소성이 높은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여 공중에 송신한다는 특성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OTT 서비스에서는 시청자들에게 콘텐츠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다른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볼 때, 기존의 방송규제에 적용되던 규제 이론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용 트래픽이나 망 이용료 등의 데이터는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 공공데이터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법인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될 경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이용 트래픽은 망 이용료와 관련하여 인터넷 회선 또는 망 사업자가 느끼는 부담이나 망 이용료의 산정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요청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망 이용료는 현행법상 ISP와 CP 사이에서 사적으로 맺어지는 계약 내용에 해당하며, 설사 사업자의 고발이나 고소로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 제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이 공개될 때에는 영업비밀로 가림처리가 되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이들 데이터는 자료의 수집과 공개를 명시하는 법률이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집 근거도 부족할뿐더러, 설사 행정 목적을 위하여 수집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제5절 소결

본 장에서는 2장의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 분석과 3장의 데이터 개방, 활용과 관련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도출한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의 주요 제약조건을 검토하였다. 주요 제약조건으로는 ①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② 방송통신분야 조사데이터 개방, ③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로의 활용에서의 저작권, ④ OTT 데이터 개방 등이다.

방송통신분야의 공공데이터가 구축, 개방되어 민간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활용성 높은 데이터를 발굴 후에 높은 품질로 개방하여야 하고, 이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생산에 관여하는 현업 부서에서도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부처 내부의 구속력 있는 법제도를 통해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체화하여야 하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포함한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부처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 규칙, 직무에 따른 권한, 업무 분장을 규정한 별도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다.

타 부처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지침, 규정과 방송통신분야 데이터의 특성,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체계 등을 고려하여 6장과 시행을 위한 부칙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을 구성하였다. 본 지침(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항만을 중심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위원회의 내부 현황을 고려하여 체계적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율하여 조직 내 업무분장의 명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법체계 및 내용의 복잡성으로 인해 실효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개방 수요조사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원시데이터(raw data)를 요구하는 의견이 존재하였고, 본 장에서 이러한 조사데이터의 공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사의 원시데이터(raw data)에는 조사수행을 위해 수집된 원본데이터로써 개인정보와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 법률상에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다. 다만, 조사데이터의 요청 주체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인 경우 일부 비식별 처리 없이 식별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통계법 제30조 제2항)이 있음에 주목하여 조사 수행에 관한 법률에 식별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조사데이터의 원본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공공기관이나 방송사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영상을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달라는 요청 또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상에서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데이터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 활용이 면책받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제한 사유는 일반조항으로 규정된 공정이용 조항과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규정 등이 있으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에 한정되므로 민간기업에서의 데이터 분석이 불가능하고, 공정이용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민간의 적극적 활용이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일반조항으로서의 공정이용 조항이 없어 일찍이 자동화된 정보분석 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을 저작권법에 반영하였고, 비영업적 목적에 한정하지 않고, 저작권자에 대한 보상없이 사업자간 공유 또한 허락하여 적극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진흥한다는 점에서 추후 우리의 저작권법 개정 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콘텐츠의 저작물을 판매계약을 통해 구입하였다더라도,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 또는 양도에 대한 약정을 마련해야 이를 학습용데이터로 활용하고 결과를 통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소관기관에서 이를 학습용데이터로 구축하기 위해 방송콘텐츠 저작물을 구입시 저작권 권리 자체의 이용허락 또는 양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 민간에서 데이터 학습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오롯이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OTT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의 개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데이터 수요자들은 OTT 시장의 사업자·이용자 현황, 이용 트래픽, 이용 시간, 매출액, 망 이용료 등 OTT 서비스 전반에 대해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수준의 조사내용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현행법상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OTT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지정하여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송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나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에서 상정하는 방송

에 대한 정의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서의 IPTV는 OTT 사업자를 포괄할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사업자에게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이 통과되어 OTT 서비스가 방송의 일부로 편입된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제공 구조와 수익·비용구조가 일반 방송과 완전히 다른 OTT 서비스에 대하여 음성·영상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면서 생기는 강력한 여론 형성기능과, 희소성이 높은 자원인 주파수를 이용하여 공중에 송신한다는 특성에 근거한 일반 방송의 규제 이론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용트래픽, 망 이용료 등의 데이터는 별도의 법령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영업비밀에 해당되어 여러 이유로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가림처리가 되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5장 결 론

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의 발달, OTT 및 K-문화콘텐츠의 성장으로 인해 방송통신 분야 데이터의 활용성과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인지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의 선도기업은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구축, 개방을 통해 데이터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분야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은 시장의 기대와 잠재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분석·활용방안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경제 전 분야의 데이터 순환을 촉진하고 데이터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수행되었다. 국내외 공공·민간데이터의 정책 및 개방 동향, 공공·민간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사례를 통해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탐색하였다. 이후 데이터 잠재 수요자들로부터 필요한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를 설문조사를 통해 묻고, 잠재 수요자와 전문가들의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이용자들의 상세한 데이터 수요와 방송통신분야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분석과 데이터 개방 수요분석을 통해 도출한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성화 제약조건을 분석하고 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데이터가 주요한 생산요소로 작용하는 데이터 경제가 도래하며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데이터 선순환을 통한 경제 진흥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고, 이러한 정책 기조에 기반하여 데이터 개방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송통신분야에서도 공공 및 민간데이터를 개방하고자 노력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38건(파일 데이터 34건, 오픈 API 4건, 2022년 11월 30일 기준)을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 공개하고 있었으며, 개방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통신사와 ICT 기업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기업 내에서 고객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하던 서비스를 점차 사업화하면서 유료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일부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이터는 협의 하에 부처에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또는 규정을 보유한 부처는 아닌 부처에 비해 데이터 개방 건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부터 개방까지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데이터 관리지침과 같은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적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데이터 개방, 품질 관리, 활용 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잠재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데이터 개방 수요조사에서 데이터 수요자들은 OTT 시장과 관련된 데이터와 방송의 시청 점유율 상세 데이터, 방송미디어 콘텐츠의 학습용데이터화, 광고 시청과 관련된 데이터, 광고실태조사 원시데이터(raw data), 방송프로그램 전후 광고 상품 통계, KBS 프로그램별 수신료 사용현황 등의 개방을 요청하였다. 특히 OTT 성장에 따른 관련 데이터 수요가 많았으며, 현 법제도 하에서 OTT 데이터 개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마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방송통신분야 공공데이터의 경우 데이터가 분절된 경우가 많고 업데이트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존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다양한 분석을 위해서 원시데이터(raw data)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전송방식에 있어서는 실시간 수집이 가능한 API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개방하고 있는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와 관련하여 수요자들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데이터의 원시데이터(raw data)도 향후 공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데이터에 메타데이터 등을 추가하여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등 기 보유 중인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및 활용사례분석과 데이터 개방 수요분석을 통해 규명된 4가지의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 제약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안)”을 신설하여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기본 규칙, 직무에 따른 권한, 업무분장을 규

정하였다. 방송통신분야의 다양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원시데이터(raw data) 개방은 현행법상에서는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어 개방이 쉽지 않지만, 조사데이터의 요청 주체가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인 경우 일부 비식별처리 없이 식별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활용하여 원시데이터(raw data)를 개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저작물의 학습용데이터화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과 주관기관에서 방송콘텐츠 저작물 구입시 저작권 권리 자체의 이용허락 또는 양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현 법체계 하에서 OTT 사업자를 포괄할 수 없어 OTT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화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잠재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공·민간데이터를 식별하고,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제약조건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사점이 방송통신분야 데이터 개방, 활용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2021~202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https://www.data.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2.5.19.),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22년도 신규 실증과제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1),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집』.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김병일(2022). EU 의 데이터법 (Data Act) 의 주요 내용과 국내 시사점. KISO 저널, (48), 19-25.
- 김정미 외(2018.10.30.),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 네이버 데이터랩 홈페이지(<https://datalab.naver.com/>).
- 노현주(2021), 『금융 마이데이터 도입현황과 시사점』, 보험연구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racoi.or.kr/kobaco/main.do>).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9.7.),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마이데이터 한눈에 내 손안으로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최초 개통됩니다』.
- 서울경제(2022.9.1.), 『지금 서울서 가장 붐비는 곳은?·KT 빅데이터로 파악』.
- 인공지능신문(2022.7.5.), 『SKT, 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지오비전 퍼즐 공개』.
- 전자신문(2020.6.10.), 『이슈분석]데이터 정책, 다른 나라는 어떻게 펼쳤나』.
- _____ (2022.5.5.), 『마이데이터 품는 이통 3사, 하반기부터 맞춤 서비스』.

한국경제(2022.11.6.), 『AI허브·통합 데이터지도…공짜 데이터 도구 많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2021.12), 『21년 미 연방 데이터 전략 실행 계획과 추진 방향』, 데이터 산업 동향 이슈 브리프.

_____ (2022.1), 『Global NewsTrends in Japan』, DATA ECONOMY, 3(3).

_____ (2022.1), 『Global NewsTrends in USA』, DATA ECONOMY, 3(1).

_____ (2022.1), 『중국의 빅데이터 법·정책 및 기술 동향』, 데이터산업 동향 이슈브리프, 2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2.5.23), 『2022 영국의 ‘공공 부문 데이터 공유’ 문서(POSTNOTE)』, Global Open Data, Now, (29).

행정안전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3),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

행정안전부(2021.12.31.),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우수사례집』.

KT 통신빅데이터플랫폼 홈페이지(<https://bdp.kt.co.kr/>).

ZDNet Korea(2022.8.9.), 『백화점 혼잡도가 궁금하다?...지오비전 퍼즐 플랫폼에 답이 있습니다』.

_____ (2022.10.14.), 『통신 3사, 연내 마이데이터 사업 뛰어든다』.

[해외문헌]

Fortune Business Insights(2022), Big Data Analytics Market Size, Share & COVID-19 Impact Analysis, By Component(Software, Hardware, and Services), By Application(Data Discovery and Visualization, Advanced Analytics, and Others), By Vertical(BFSI, Automotive, Telecom/Media, Healthcare, Life Sciences, Retail, Energy & Utility, Government, and Others), and Regional Forecast, 2022-2029.

OECD(2021), OECD Broadband Statistics 2021.

_____ (2022), Digital Economy Outlook 2022.

● 저 자 소 개 ●

윤 성 욱

- KAIST 경영공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이 영 중

- 고려대 경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민 진

- KAIST 경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강 준 모

-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경제학 박사
- 현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선 지 원

- Universität Regensburg 법학박사
- 현 광운대 교수

이 보 욱

- 성균관대 법학박사
- 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

정 원 준

- 고려대 법학박사
- 현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문 정 욱

- 고려대 행정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센터장

이 준 배

-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 현 국방대 교수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KCC-2022-2

방송통신분야 공공·민간데이터 활성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public and private data
vitalization policy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2022년 12월 일 인쇄

2022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인쇄 경성문화사
